

[3개 기관 공동 포럼 발표 자료집]

일제의 전쟁에 동원된 아동과 여성

2020년 8월 13일(목) 14:00~16:00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동북아역사재단

일정표

시 간	내 용	진 행
14:00 ~14:05	개회사	서혜란(국립중앙도서관 관장)
14:05 ~14:10	축사	박양우(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4:10 ~14:20	기조강연	김도형(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14:20 ~14:50	발표	‘고난을 겪어낸 큰 사람들, 미발굴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동원된 조선의 작은 사람들 - 노무작업장의 아이들’ 정혜경(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대표연구위원)
14:50 ~15:40	토론 및 질의응답	좌 장 : 남상구(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문제연구소장) 토론자 : 허광무(한국외대 일본연구소 초빙연구원) 신희석(연세대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 김정은(국립중앙도서관 사무관) 이영도(국가기록원 연구관) 조 건(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위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개회사〉	6
서혜란(국립중앙도서관 관장)	
〈기조강연〉	11
일제의 식민침탈 바로 알기, 한일관계 재정립을 위한 첫 걸음	
김도형(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발표〉	
고난을 겪어낸 큰 사람들, 미발굴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동원된 조선의 작은 사람들 노무작업장의 아이들	25
정혜경(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대표연구위원)	
〈토론〉	
「고난을 겪어낸 큰 사람들, 미발굴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동원된 조선의 작은 사람들 노무작업장의 아이들」 토론문	51
허광무(한국외대 일본연구소 초빙연구원)	
「국제법과 일제의 전시 아동 노동동원」	53
신희석(연세대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	
「국립중앙도서관의 일제강점기 자료 현황」	61
김정은(국립중앙도서관 사무관)	
「일제 강제동원 관련 명부 통합 DB구축」 추진상황	63
이영도(국가기록원 연구관)	
「동북아역사재단 일제 침탈 관련 대응 현황」	67
조 건(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국립중앙도서관장 서혜란입니다.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동북아역사재단이 “일제의 전쟁에 동원된 아동과 여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마련한 「일제강점기 자료 공동활용을 위한 3개 기관 공동포럼 및 전시」 행사에 직접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을 주최 기관들을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언론, 학계, 사회단체 등에서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곤 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감정이 끓어오르는 것은 한국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정은 순수한 것이지만, 비록 거짓된 논리와 증거일지라도 그것을 앞세우며 일제강점기의 의미를 호도하는 세력 앞에서 목소리가 작아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모인 3개 기관들은 저마다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모두 역사적인 기록과 사실에 기반하여 일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가기록원은 문헌과 기록물을 수집하고 보존하며 이를 후세에 전할 사명을, 동북아역사재단은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깊이 있는 분석과 견해를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기관이 오늘 한 자리에 모인 것은 그래서 필연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안팎의 비교적 가까운 과거입니다. 따라서 그 전 시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자료와 기록물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아직도 발굴되지 못한 채 빠르게 훼손되고 소멸되는 자료 역시 많은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 자료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수집·보존하고, 분석함으로써 이 시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논의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다각적 연구 활동이 시급합니다. 3개 기관은 일제강점기라는 아픈 역사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실에 입각한 논리적 근거와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뚝뚝 걸어왔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할 길을 조망하고 설계하는 일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3개 기관이 협력을 통한 단계 발전한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다는 희망을 마음에 품고서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의 행사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13일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서혜란

기
조
강
연

**일제의 식민침탈 바로 알기,
한일관계 재정립을 위한 첫 걸음**

김도형(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일제의 식민침탈 바로 알기, 한일관계 재정립을 위한 첫 걸음

김도형(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요 지]

- ① 현재 한일 간의 문제는 대부분 일제 침탈이라는 역사 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
- ② 1965년 한일협정은 제2차대전 이후의 냉전체제 아래 맺어진 것으로, ‘식민’ 지배라는 ‘과거사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지 못했다.
- ③ 그 이후 일본은 식민지배는 ‘합법적’이지만, 그로 인해 다수의 한국인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었던 점에 대해 ‘사죄’를 여러 차례 표명하였다.
- ④ 근년에 들어 국제정세의 변동 속에서 일본이 우경화되면서 식민 침탈이 강압적,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조차 외면하고 있다.
- ⑤ 냉전체제가 약화되면서 세계를 움직이는 이념과 가치도 바뀌고 있다. 일본 군‘위안부’ 문제나 한국대법원의 강제노동 위자료 판결 등도 그런 추세를 반영한다.
- ⑥ 앞으로 한일 관계의 구시대적인 냉전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방향에서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 ⑦ 이와 더불어 일제 침탈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정리와 학문적, 객관적 연구를 통하여 식민지배의 성격을 명확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국내 역사 관련 기관의 결합이 있기를 바란다.

(1)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 사이의 정치, 사회적 관계는 편안한 때가 거의 없었다. 1965년 한일협정 시기에도 그러하였지만, 국교 정상화 이후에도 역사교과서 문제를 시작으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더 그러하였다. 2015년 말에 그때까지의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협의’하여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그 합의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미봉책에 불과하여 지금 정부 이후에 다시 터졌다. 무엇보다도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그 이후에 이로 인한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 또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폐기 등 경제, 안보 문제로도 비화되었다. 이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동원 기업의 재산에 대한 ‘현금화’ 조치가 나오게 되면 한일 관계가 더 경색될 것이 뻔하다.

올해에 검정된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문제, 일본 정부의 외교청서와 국방백서, 그리고 코로나19라는 핑계로 취해진 일본의 무비자 취소와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맞대응 등도 한일 간의 신뢰가 없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된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된 사안도 그러하다. 처음 유네스코 등재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한국은 이 시설 중에 한국인(아시아인)의 강제 노동이 있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고, 일본은 이런 사실을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설명 중에 담겠다고 국제 사회에 약속하였다. 그러나 최근 개관한 산업유산정보센터에는 이런 사실을 언급조차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동하였다는 점만 부각시켰다. 이에 대해 한국은 강하게 항의하고 심지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한일 간의 경색은 ‘과거사’ 문제, 곧 일제의 식민 침탈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지 못한 점에서 비롯되었다. 야기된 문제 대부분이 역사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신뢰가 쌓이지 못하니, 그 불뚱이 경제, 문화교류, 안보 문제 등으로 옮겨간 것이다.

(2) 한일 간의 역사 문제는 식민지배 체제를 이해하는 생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성을 부정하고, 식민지배의 합법성과 그 성과를 말하고 싶어 한다. 이에 비해 한국은 일제 침략의 불법성과 약탈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일본이 무모한 전쟁 수행을 위해 한국민을 ‘강제동원’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역사인식의 차이를 좁히려는 기회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된 1965년 한일협정에서 이를 해결하지 못했다. 흔히 한일 간의 ‘국교 정상

화'라고 한다면, 식민지배와 해방 이후에 단절되었던 양국의 외교 관계를 정상적인 국가 관계로 설정하는 것이었다. 일본이 제2차 대전에서 패하자 한국도 '해방'되었고, 유엔 주도 하의 총선거를 통해 합법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또 일본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였다. 이런 사실에 기초하여 한국과 일본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정립하여야 하였다. 따라서 한일협정은 당연히 일제의 식민지배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끝내야 하였다. 한일은 이런 내용을 「한일기본조약」 2조에 담았다.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것이었다(*밑줄 인용자, 이하 같음). 보호국이 된 을사늑약이나, 나라가 없어진 강제병합조약이 모두 무효가 되었으니, 일제의 강점도 법적으로 끝났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식민지배가 법적으로 끝났다는 것이지, 일제가 식민 침탈했던 것에 대한 어떠한 '청산', 특히 식민지배에 대한 '잘못과 사죄'를 표현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 조항의 해석을 두고도 한일 간에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해석이 갈린 부분은 '이미'의 시점이었다. '이미 무효'라고 한다면 언제부터 무효가 되었는가라는 문제였다.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잘잘못에 대한 생각도 내포하였다. 한국은 당연히, 강제병합조약과 이에 이르는 과정, 가령 을사늑약, 정미7조약 등등은 체결 당시부터 불의, 부당하고 불법적이므로 '이미' 무효라고 보았다. 이에 비해 일본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성립되었기(패전국 일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성립되었지만) 이때부터 '이미' 무효라고 하였다. 한일 간에 이런 해석과 역사인식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덮어 버리고 각자 해석하도록 하였다. 이런 골을 메우지 않고 한일협약을 맺은 것은 당시의 국제정세, 특히 냉전 체제의 산물이었다.

(3) 1965년 한일협정에서 식민지배의 성격과 '사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관계로, 그 이후의 한일관계에서 언제나 '과거사' 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되었다. 1990년대 이후 우리 정부는 일본의 사죄 혹은 사과를 요구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한일협정 당시에 거론도 되지 않았던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실체가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요구는 더 강해졌다. 따라서 일본도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로서 그 책임과 반성을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1965년 당시의 인식과 해석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

다. 식민지배는 합법적이지만, 다만 도덕적으로 ‘불행했던 과거’로 인해 한국이나 아시아 여러 나라에 ‘고통과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 ‘사죄하는 마음’을 표명하였다. 한국은 일본이 식민지배 자체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나마 식민지배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고 이에 사죄하는 마음을 표한 것만으로 한일 관계를 유지해갔다.

그동안 일본이 행한 대표적인 ‘사죄’ 표명은 아래와 같다.

- ① “일본에 의해 초래된 불행한 시기에 한국 국민들이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면 통석(痛惜)의 염(念)을 금할 수 없다”(‘천황’, 1990년 5월 노태우대통령 방일)
- ② “장기간에, 또한 광범한 지역에 걸쳐 위안소가 설치되어 수많은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것이 인정되었다. 위안소는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립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하였다. 위안부의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맡았으나, 그 경우에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이 있으며, 더욱이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하였다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다. / (….) 결국, 본 건은 당시 군의 관여 하에서,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준 문제이다. 정부는 이 기회에, 다시금 그 출신지의 여하를 묻지 않고, 이른바 종군위안부로서 허다한 고통을 경험당하고, 심신에 걸쳐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올린다.”(고노 관방대신, 1993. 8. 4. 일본정부의 일본군‘위안부’ 조사 결과)
- ③ “한반도의 여러분에게 큰 고난을 안겨준 시기가 있었다. (….) 몇 해 전에 이에 대해 깊은 슬픔을 표명했고 지금도 변함없는 심정”(‘천황’, 1994년 3월, 김영삼대통령 방일)
- ④ “우리나라는 멀지 않은 과거의 한 시기, 국가정책을 그르치고 전쟁에의 길로 나아가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빠뜨렸으며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제국의 여러분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 저는 미래에 잘못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의심할 여지도 없는 이와 같은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서 다시한번 통절(痛切)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합니다. 또 이 역사로 인한

내외의 모든 희생자 여러분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바칩니다.” (무라야마 총리 ‘종전’ 50주년 담화, 1995. 8. 15.)

- ⑤ “오부치 총리대신은 금세기의 한·일 양국관계를 돌이켜 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 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다.” (김대중·오부치 파트너십 선언, 1998. 10. 8)
- ⑥ “한때 일본이 한반도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시기가 있었다. (...) 그 에 대한 깊은 슬픔은 언제나 제 기억 속에 머물러 있다.”(‘천황’, 1998년 10 월 김대중대통령 방일)
- ⑦ “일본국은 일찍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 특히 아시아 제국의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 다시한번 통절한 반성과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함과 더불어 지난 대전에서의 내외의 모든 희생자에게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비참한 전쟁의 교훈을 풍화시킴이 없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는 일 없이 평화와 번영에 공헌해 나갈 것을 결의합니다.” (고이즈미 총리 종전 60주년 담화, 2005. 8. 15).
- ⑧ “정확히 100년 전 8월,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어 이후 36년에 걸친 식민지 지배가 시작되었습니다. 3·1 독립운동 등의 격렬한 저항에서도 나타났듯이, 정치·군사적 배경 하에 당시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하여 이루어진 식민지 지배에 의해 국가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 (...) 이러한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다대한 손해와 아픔에 대해, 여기에 재차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의 심정을 표명합니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 강제병합 100주년 담화, 2010. 8. 10)

(4) 아베 총리 집권 이후, 역대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견지하던 ‘사죄’의 강도는 흐려지기 시작하였다.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국제정세의 변화와 일본의 국제적 위상에서 오는 것으로, 일본의 보수화, 우경화와 맞물려 있다. 특히 제2차대전과 원폭 문제를 분리하여, 자신들이 원폭의 유일하고 최대의 피해자라는 점만 강조하지 자신들이 일으킨 ‘전쟁’의 잘못은 항상 뒤로 숨기고 있다.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은 2015년 8월, “종전 70주년” 담화에 잘 드러난다. 물론 외형적으로는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잘못을 인정하고 역대 내각이 표명했던 입장을 고수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20세기 전시 하에 수많은 여성들의 존엄과 명예가 크게 손상된 과거를 우리 가슴에 계속 새기겠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일본은 이런 여성들의 마음에 늘 다가가는 나라가 되려고 합니다. 21세기야말로 여성의 인권이 손상되는 일이 없는 세기로 만들기 위해 세계를 리드해 가겠습니다”라고 하여, 일반적 차원에서 여성과 인권의 문제도 거론하였다(자신의 입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표현하지 않겠다는 속내이지만).

또한 아베 총리는 자신들이 추구했던 ‘대동아공영권’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도 언급하였다. 즉 “우리는 경제 블록화가 분쟁의 싹을 키운 과거를 우리 가슴에 계속 새기겠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일본은 어떠한 나라의 자의에도 좌우되지 않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열린 국제경제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개도국 지원을 강화하며, 세계의 더 큰 번영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번영이야말로 평화의 초석입니다”라고 하였다. 물론 이런 연사는 최근 일본이 야기한 한일간의 무역 분쟁과는 매우 다르다.

우리는 아베 총리가 담화의 초반부에 제기한 다음의 대목에 주목해야 한다. 잘못된 일본 침략 전쟁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하는 첫머리에

100여 년 전의 세계에는 서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의 광대한 식민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배경으로 식민지 지배의 물결은 19세기 아시아에도 밀려왔습니다. 그 위기감이 일본 근대화의 원동력이 되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입헌정치를 내세우며 독립을 지켜냈습니다. 일로[러일]전쟁은 식민지 지배 하에 있던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인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러일전쟁을 일으킨 것은 한반도와 만주를 지배하기 위한 침략 전쟁이 아니고, 백인인 서구(러시아) 제국주의의 침략 앞에서 동양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인식, 곧 “동양평화를 위한 인종(人種) 전쟁”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이다. 이런 역사관은 침략전쟁을 미화하여 한일 간에 큰 문제를 일으켰던 “후쇼샤판 역사교과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 그대로였다.

(5) 1965년 부속협약의 하나로 맺은 ‘청구권협정’도 여전히 불씨를 안고 있다. 그
요점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 간의 청구
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
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a)3억 달러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
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
공한다. (b)2억 달러 차관을 본 협정의 효력 발생 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행한
다. (...) 제공 및 차관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

제2조 1. 양 체결국은 양 체결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
과 양 체결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에서 청구
권협정의 문제점을 새롭게 지적하였다. 한국 대법원은 어떤 점에서 강제 징용자에
게 일본 기업의 피해 보상을 결정하였는가. 2012년 5월,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
2018년 판결 모두 그 요지는 동일하다.

- ①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는 불법적인 강점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
신, 핵심 가치와 양립할 수 없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
- ② 청구권 협정 제1조의 경제협력자금이 제2조 권리 문제 해결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움 : “청구권협정 제1조에 의해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
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은 제2조에 의한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 대
가 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 ③ 일본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이런 점에서 “청구
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④ 국가가 조약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동의 없이 소멸시킬 수 없음(근대법의 원리).

- ⑤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했다는 한일 양국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음.
- ⑥ 일본도 청구권 협정 이후 관련 법률을 제정한 것은 협정만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기 때문.
- ⑦ 개인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협정으로 소멸된 것은 외교적 보호권이 상실된 것.

(6) 일제식민지배의 성격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식민지적 강압, 강제와 수탈일 것이다. 이런 점은 개항(조일수호조규, 이른바 강화도조약, 1876) 후, 일본의 침탈 과정에서 보인 명백한 속성이자 특징이었다. 물론 일제는 이를 숨기기 위해 ‘조약’, ‘협약’이라는 합법적인 형태를 취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무력에 의한 강압으로 침략하였다.

일제는 대륙 침략 이후 전쟁을 일으키면서 한국인을 다양한 형태로 전장이나 그 후방의 군사시설, 공장 등에 노동자는 물론 여성, 아동까지 강제적으로 동원하였다. 그런데 일본(혹은 일부의 친일적 우익 연구자)은 이런 강제성을 은폐하기 위해 다양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우선, 한국인의 동원은 ‘충동원령’ 등과 같이 일제가 침탈과 지배를 위해 만든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 동원도 강제가 아니라 관련자가 모두 ‘자원’ 혹은 ‘생계’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된 유네스코 등재의 근대산업시설에 ‘동원’된 한국인 노동자가 모두 그러하다는 것이었다.

식민지 사회체제는 기본적으로 식민모국의 무력과 법령에 의한 강제성을 기반으로 유지되었다. 무력에 의한 강제는 교육, 선전 등으로 이를 보완하여 완결적으로 수행하였다. 소수의 친일세력을 제외하고 한국의 민중은 어쩔 수 없이 무력, 규율의 강제적 체제에 적응하며 살아간 것이다. 일본이 전쟁에서 항복하자, 바로 거리로 뛰어나와 해방의 ‘만세’를 외쳤던 것이 우리 민족이고 민중이었다(일본의 패배로 통곡하던 사람들과 다르다). 사회 전반에 흐르는 ‘강제성’을 기반으로, 전쟁의 수행을 위해 행해진 노무동원, 일본군 ‘위안부’, 징용, 징병에는 더 심한 강제가 가해졌다. 이념적으로 세뇌되어 이를 자발적인 확신으로 여긴 경우도 많았다.

(7) 일본은 지금도 일제 식민 침탈의 불법성과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 지도자의 ‘사죄’도 식민지배 체제 자체가 아니라 식민지배로 인해 가해진 ‘고통’에 대한 사죄였다. 이런 정도의 ‘사죄’라도 부족한 것이었지만, 그래도 현실

에서의 한일관계를 그러저럭 유지해갔다. 그런데 지금은 이 정도 수준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서 식민침탈 시기의 역사를 바라보는 일본의 시각(역사인식)을 바꾸어야 하고, 동시에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작업을 진척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두 작업은 맞물려 있다.

(가) 역사를 보는 시각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뀌고, 또한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 구상에 따라 달라진다. 한일의 역사인식은, 현재의 변화된 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동시에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1965년, 불완전한 형태로 한일협정이 맺어진 것은 당시 냉전체제 아래의 동북아시아 정세와 무관하지 않았다. 미국은 동북아 지역의 ‘반공(反共) 전선’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다.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도 이런 정치적인 필요성과 더불어 각자의 경제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하였다. 더욱이 한국은 남북대립에서의 우위, 그리고 경제발전을 위한 ‘자금’과 기술이 절실하게 필요하였다. 한일협정은 이런 구조 하에서 맺어졌다. 아물지 않은 식민지배라는 상처를 불안정한 체제로 봉합한 한일관계를 다시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런 냉전의 산물을 일본의 ‘원죄’를 덮어준 샌프란시스코조약(1952)도 마찬가지였다.

한일협정 이후 50여 년이 지나면서 세계를 움직이는 새로운 가치들이 등장하였다. 가령 인권, 여성, 자유무역, 평화 등이 그런 것이다. 냉전적인 세계구조도 점차 와해되고 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요구하고 있다. 강제동원 문제를 둘러싼 한일의 대립도 개인의 청구권 문제, 국가와 개인의 관계 등에 대한 생각도 진전되었다. 그때의 법 조항이나, 조약도 세월이 지나고 가치 이념이 달라지면, 새로운 법으로 고치기도 하고, 새로운 해석을 담은 조약을 맺을 수도 있다.

이런 새로운 지향은 미래를 향해, 개인적인 인권의 신장과 더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평화공동체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역사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을 일으킨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면 결코 미래지향적이 될 수 없다. 지금의 이런 역사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역사적 사실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지적해야 한다.

(나) 위와 같은 역사인식의 변화는 구체적 역사사실을 규명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제 강점 아래의 한국 사회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연구이다. 현재 학계에서도 식민지배 아래의 사회 성격을 다양하게 보고 있다. 이는 남북분단 체제와, 한국의 경제발전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일제 강점시기의 사회를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연구 과제이기도 하다. 수탈론과 개발론, 식민지반봉건사회론, 식민지근대화론 등이 모두 그런 것이다.

근래 잘못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작성된 시중의 한 책은 남북 분단고착적 사고 방식을 기반으로, 독재체제와 그 아래의 경제발전을 중시, 미화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인식에서 일제 강점 아래의 한국사회가 근대적으로 발전했다고 하고, 또한 노무자나 일본군‘위안부’ 조차 강제로 동원된 적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다르게 볼 수 있는 한 두 개의 사례를 침소봉대하여 식민체제 전체가 그런 것으로 설명하거나, 총독부가 통치의 성과를 선전하고 또 그 필요에 의해 작성한 통계를 동원하여 식민지의 실상을 오도하고 있다. 또 다른 학계의 일각에서는 식민지 아래의 근대적 양상에 환호하기도 하고, 혹은 강압적인 사회체제 아래에서 제대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다수의 민중을 ‘회색지대’라는 말로 왜곡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식민지 아래에서 우리 ‘민족’이 중심이 된 경제성장은 없었고, 성장의 ‘과실(果實)’은 대부분 일본의 거대 자본, 지주 손에 들어갔다 (물론 소수의 한국인 지주, 예속자본가도 있었다). 몰락하는 농민들이 늘어나고, 농촌에서는 소작농이 더 많아졌으며, 농촌에서 살지 못한 농민들은 남부여대(男負女戴)하여 만주로, 일본으로 조금이라도 나은 것을 향해 정든 터전을 떠났다. 만주로 가는 기차를 당시 ‘기민(棄民) 열차’라고 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이런 식민체제 아래에서 개인이 정치와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과정은 결코 없었다. 일제는 이런 교육을 한 적도 없었고, 오히려 식민체제에 순응하고, 심지어 전쟁조차 ‘성전(聖戰)’이라는 이름 아래 몰아갔다.

(다) 일제 강점 아래의 사회 성격은 명확한 사실 규명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학문연구는 자료를 자의적으로 봐서도 안 되고 무분별한 취사선택이 있어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료를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이다. 창피한 일이지만, 해방 이후 정부 차원이나, 학계 차원이나 일제침탈의 역사와 사회를 체계

적으로 정리하지 못했다. 일부의 선각적인 연구자들이, 몇 개의 문제나 시기(토지조사사업, ‘문화정치’ 대륙침략과 공업화, 강제동원 등)에 대한 수준 높은 연구서를 출간하였지만, 아직도 다루지 못한 주제들도 많고, 서고 속에 먼지를 쓴 자료들이 많다. 거대한 비용이 드는 이런 작업은 학계에 맡기기 보다는 정부의 기관이라도 이를 감당해야 한다.

특히 자료의 체계적 정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동안 일본, 주로 재일 조선인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식민지배의 약탈을 연구하고 또한 많은 사료를 모아 간행한 정도이다(박경식, 강덕상 등). 연구자는 아니지만 시민운동차원에서 자신들이 일본에 살게 된 역사적 연원을 밝히고, 또한 자신들의 고달픈 생활의 원인을 가져다 준 강제동원 문제를 다룬 정도이다.

물론 지금까지 정부에서 강제동원과 아시아·태평양전쟁 희생자 문제, 친일파 문제를 다루는 한시적인 위원회 등을 두어 활동하였다. 주로 당사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주류였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학문적 연구와 더불어 자료의 공동 정리를 통한 연구 기반을 만드는 일이다. 현재 식민지배의 실상을 말해주는 많은 자료는 각 기관, 대학에 분산되어 있다. 정부의 기관만 하여도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독립기념관, 일제강제동원역사관 등이다. 이번 전시회와 학술회는 그 가운데 세 기관만이 참여하였지만, 각 기관이 소장한 자료와 연구력을 결합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앞으로는 기관의 자발적인 단순 협력을 넘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다. 위에 열거한 이런 기관들은 대개 개별적이고, 따라서 업무에서 다소의 중복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사 문화를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조정까지 행하는 공식적, 법적인 ‘협의회’ 같은 것이 있기를 바랄 수 있다. 자료의 통합 관리, 연구와 정책 수립, 국민 교육과 홍보에 이르는 전 과정이 일관성 있는 기획 하에 추진되기를 희망한다.

고난을 겪어낸 큰 사람들,
미발굴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동원된
조선의 작은 사람들 노무작업장의 아이들

정혜경(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대표연구위원)

고난을 겪어낸 큰 사람들, 미발굴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동원된 조선의 작은 사람들 노무작업장의 아이들

정혜경(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대표연구위원)

1. 총력전쟁과 민간인 피해 - 노무동원 연구의 현주소

1945년 8월 14일 일본 어전회의가 포츠담 선언 수락을 결정하고 쇼와(昭和) 천황이 재결(裁決)하고, 9월 2일 미주리 함상에서 연합군과 일본국간 항복문서 조인으로써 아시아태평양전쟁, 제2차 세계대전은 완전히 끝났다. 제2차 세계대전은 조선 민중이 경험한 최초의 근대전쟁이자 총동원 전쟁이었다. 1918년에 끝난 제1차 세계대전은 처음으로 탱크와 항공기가 등장하고 여성 노동자가 군수공장에서 무기를 만든 전쟁이자 민간인을 포함해 약 천만 명이 목숨을 잃은 전쟁이었다. 끔찍한 전쟁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제연맹을 창설했으나,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탄생한 총력전 사상을 토대로 세계는 아시아태평양전쟁(1931~1945)과 제2차 세계대전을 맞았다.

총력전은 식민지를 포함한 제국의 모든 인력과 물자, 자금을 총동원하는 전쟁이다. 제1차 세계대전 말기 프랑스가 처음 ‘총력전(guerre totale)’을 사용했다.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총력전 개념이 출현하게 된 이유는 새로운 전쟁 상황 때문이었다. 이전에는 병사들끼리 전투가 중심이었으므로 병사의 질과 양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대형 폭탄과 기관총·전차 등 대량 살육 무기가 발달했다.

이같이 이제 전쟁은 전쟁터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질이 좋은 병사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많은 탄약과 연료가 필요했고, 군수품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할 전비와 국력이 필요했다. 우수한 무기를 생산할 과학 기술도 필요했고, 국내의

정치적 혼란이나 대립도 없어야 했다. 외교력도 뛰어나야 했고, 국민이 전쟁을 감수할 의지도 있어야 했다. 국민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 자신의 주머니를 털고 안락한 일상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므로 각국은 사상 통제와 프로파간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정신적 단결을 도모해야 했다.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 참전 과정에서 근대 전쟁관인 총력전 사상을 접했다.¹⁾

아시아태평양전쟁 · 제2차 세계대전과 이전 세계 전쟁의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국가권력이 민간인과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민간지역 공습으로 민간인들에게 다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 시기 민간지역 공습은 피카소 작품 ‘게르니카’(1937년 4월 26일 독일 공군과 이탈리아 공군이 스페인 바스크 지역 소도시 게르니카를 3시간여 폭격한 사건을 주제로 한 작품)’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시기적으로는 일본의 민간지역 공습이 더 빨랐다. 1931년 10월 8일, 만주사변(1931년 9월 18일)을 일으킨 일본 관동군은 쇼와 천황의 재가를 얻어 중국 진저우(錦州) 공습을 감행해 많은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었다. 진저우 공습은 제1차 세계대전 종결 후 처음 실시한 도시폭격이었다.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 직후부터는 도시 폭격이 더 빈번했다. 8월 15일 해군항공대의 난징(南京) · 난창(南昌) 공습도 많은 민간인을 살상한 사건이었다. 중국 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의 벤슈웨(卞修羅) 연구에 따르면 중국 항일전쟁(중일전쟁의 중국식 표현) 시기 일본 침략군에 의한 중국 민간인 사상자는 2,300만 명이다.²⁾

이같이 아시아태평양전쟁 · 제2차 세계대전기 폭격과 공습의 역사는 연구를 통해 알려졌다.³⁾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사회적 약자(노인, 여성, 아이, 환자 등)의 피해는 가늠할 수도 없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는 전시 중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동원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제국 일본 영역 노무작업장에 동원된 조선의 사회적 약자의 존재에 대해서는 일본은 물론, 국내 학계에서도 알려진 바 없다. 현황 파악은 물론, 존재 자체도 낯선 주제이다.

노무동원 연구의 현주소를 통해 원인을 알아보자. 아시아태평양전쟁기 강제동원

1) 일본의 총력전 체제 구축 과정에 대해서는 안자코 유카, 「조선총독부의 총동원체제(1937~1945) 형성 정책」, 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참조

2) 리쿤우 지음, 김택규 옮김, 『내 가족의 역사』, 북멘토, 2014, 8쪽

3) 스벤 린드크비스트(Sven Lindqvist) 지음, 김만섭 옮김, 『폭격의 역사-백인 우월주의가 낳은 학살과 야만의 기록』, 한겨레신문사, 2003; 아라이 신이치 지음, 윤현명·이승혁 옮김, 『폭격의 역사』, 어문학사, 2015

피해는 인적·물적·자금 동원이다. 이 가운데 조금이나마 연구 성과를 보이는 주제는 인력동원이다. 강제동원의 연구가 인력중심에 머물러 물자와 인력, 자금의 상호관계로 확장되지 못한 결과이다. 물자수송과 관련한 인력동원, 인력동원과 물자·자금동원의 관계 등은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인력동원 연구 방향이 균형감을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일본학계와 199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 학계 연구에 힘입어 일제 말기 강제동원 피해 가운데 인력동원 주제 가운데 노무동원은 꾸준히 성과를 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노무동원 연구는 정책사 중심에 지역(일본 지역)과 직종의 편중(탄광 중심)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소수자(여성과 어린이)가 설 자리는 없었다. 이 가운데 여성동원 주제를 보면, 인력동원 연구가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여성동원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나 여성동원 정책 관련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⁴⁾ 이러한 연구 경향은 자료의 한계와 함께 사회적 인식과도 관련된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일제 말기 여성동원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와 일본지역으로 동원된 근로정신대 정도가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도 한국의 피해자 사회에서 여성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를 제외하면 ‘피해자’가 아닌 ‘유족’일 뿐이었다. 근로정신대에 관한 인식도 일본군위안부와 혼재되어 있다가 2005년 이후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진상조사와 2010년대 초 이후 근로정신대 관련 시민단체의 노력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을 뿐이다. 미성년노무자 문제는 여성동원보다 더 심각하다. 연구논문이나 연구서는 찾기 어렵다. 언론보도자료나 대중용 교양서를 통해 몇몇 사례만을 알 수 있다.⁵⁾

4) 여성동원정책에 대해서는 김경옥, 「총력전 체제가 일본의 여성노동정책과 인구정책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일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김경주, 「아시아 태평양전쟁기 일본의 모성에 관한 연구 : 여성동원 수단으로써의 모성의 관점에서」, 숙명여대 일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김미정, 「전시체제기(1937~1945)조선여성에 대한 성(性)동원 실태」,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석사논문, 2005; 김미정, 「전시체제기 조선총독부의 여성노동력 동원정책과 실태」,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가, 동원실태에 대해서는 김미현, 「조선총독부의 농촌여성노동력 동원 - '옥외 노동' 논리를 중심으로」, 『역사연구』13, 2003; 김미현, 「전시체제기 인천지역 학생 노동력 동원」, 『인천학연구』12, 2010; 정혜경, 「일제말기 남양군도 노무동원과 조선 여성」, 『역사와 교육』23, 2016이, 근로정신대에 관해서는 여순주, 「일제말기 조선인여자근로정신대에 관한 실태연구」,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1994 등의 연구 성과가 있다. 이 가운데에서 동원정책과 실태를 포괄한 연구는 김미정과 정혜경의 논문이다.

5) 송혜경, 「식민지 말기 일제의 항공정책과 아동의 전쟁동원」, 『한림일본학』19, 2011; 정혜경, 『봄날은 간다 - 방적공장 소녀, 정용』, 도서출판 선인, 2011; 정혜경,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동원된 조선의 아이들』, 섬앤섬, 2019; "일제가 9살 여아도 끌고 강제노역 시켰다"〈보고서〉, 연합뉴스 2013.10월 14일자

자료의 문제로 들어가면 더욱 척박하다. 일본 전시체제가 여성은 인력동원정책에 포함된 동원 대상이었다. 그러나 현재 발굴된 일제 말기 인력동원 관련 각종 자료에서 여성노무동원 규모에 대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소화 15년 노동자원조사에 관한 건」, 「노무동원 실시계획」 등 일본 당국이 생산한 수요조사 관련 자료⁶⁾에서 일부 발견할 수 있으나 1940~1941년도의 동원 목표 수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실시통계는 물론이고, 여성의 노무자 동원 실태를 알 수 있는 명부자료는 미발굴 상태이다. 일부 노무자공탁금문서나 후생연금명부 등에서 여성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유수(留守)명부나 부로(虜擄)명표, 피징용사망자연명부 등 군무원 관련 명부에서는 ‘군간호부’나 ‘교환원’ 등 특수 직종 여성을 확인할 수 있으나 노무자 명부에서는 여성을 찾을 수 없다.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성별 구분이 없고 여성만의 특수 직종도 찾을 수 없어 판별이 쉽지 않다. 확인이 가능한 명부는 가족 단위의 남양군도 송출자 명부에서 ‘처(妻)’와 ‘녀(女)’ 등 가정에 딸린 식구로 기재된 여성이다. 일본 정부가 공개한 각종 통계에도 여성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실태는 1950년대에 한국 정부가 생산한 2종의 명부(일정시피징용자명부, 왜정시피징용명부)나 피해자들이 생산한 명부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노무동원의 규모는 파악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피해조사결과를 통해 대략적인 추이와 경향성을 가늠할 수 있을 뿐이다. 미성년동원에 대한 자료는 전무하다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 일제 말기 인력동원 연구의 토대는 척박한 상황에서 이루어낸 1세대 연구자(박경식 등)들의 연구 성과다. 그러나 이후 한국 학계는 오히려 1세대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는 과정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일본의 전시체제와 시대상을 왜곡하거나 강제성의 범위를 연구자 스스로 제한하는 부정적인 역할도 했다. 무책임한 결과물은 언론과 교과서 등을 통해 한국 사회에 확산해 ‘반일종족주의’로 대표되는 역사부정론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⁷⁾

해결 방향은 일본 전시체제 및 제도 운용에 대한 거시적 연구와 다양한 실태에 관한 미시적 연구의 축적을 통한 실상의 규명일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전시 노무작업

6) 김미정, 「전시체제기 조선총독부의 여성노동력 동원정책과 실태」,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34~37쪽.

7) 역사부정론자에 대한 반론과 국내외 학계의 오류에 대해서는 정혜경 외, 『반대를 논하다·반일종족주의의 역사부정을 넘어』, 도서출판 선인, 2019 참조

장에 동원된 사회적 약자라는 연구주제는 일제 말기 인력동원 연구 시각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해주는 시도로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동원은 현재 학계가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주제이다. 이 자리를 빌어 개인적으로 수집한 미성년 노무자 관련 자료를 근거로 향후 활발한 자료 발굴과 연구 성과를 기대하며 거친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학계와 한국 사회에 던지는 문제 제기 정도로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사회적 약자를 동원한 노무동원 정책

위원회가 피해자로 판정한 여성은 총 1,076건[노무자 1031건, 군무원 21건, 일본군위안부 23건, 기타 1건]이다. 1인이 수차례 동원된 사례가 있으므로 인원수로 보면, 1,026명[노무자 982명, 군무원 20명, 일본군위안부 23명, 기타 1명]이 된다. 피해 유형 가운데 일본군위안부를 제외한 1,053건의 세부 직종을 보면, 노무와 군무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위원회의 피해조사결과 중 피해 유형은 피해 신고인의 신고 당시 기재 내용을 근거로 하는데, 신고인이 내용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해조사과정에서 확인한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⁸⁾

군무원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간호부와 전화교환원 등 명백히 군무원으로 볼 수 있는 피해 건수가 14건(이 가운데 8명은 일본 정부 생산한 군무원 명부에 등재)이다. 그러나 21건 중 9건은 공장(6건)과 기타 노무(2건), 탄광산(1건)에 동원된 사례이므로 피해 내용으로 보면 노무동원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타 1건도 공장에 동원된 사례이다. 이같이 1,076건 가운데, 일본군위안부피해자 23명을 제외한 대상자 1,053건을 피해내용별로 다시 정리하면, 1,031건+10건=노무동원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1,041건(노무자 피해결정 1,031건+군무원 피해결정 9건+기타 피해결정자 1건, 991명)으로 판단된다.

8) 이 수치는 행정부 행정망 피해진상시스템에 탑재된 여성피해자 통계(1,747건)와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중복 동원수치 반영 여부 문제이다. 위원회 통계는 신고 당시 신고인이 명확히 중복 동원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산에 단일 건으로 등재된다. 둘째, 신고서 입력 당시 발생한 성별표기 오류가 수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1,076건의 수치는 필자가 신고 당시 성별 표기에 남성이 '여성'으로, 또는 여성이 '남성'으로 잘못 표기된 사례를 모두 찾아내서 수정한 수치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유소년 노동이다. 여성노무동원 피해 1,041건 가운데 연령을 산출할 수 없는 11건을 제외한 1,030건의 평균 연령은 16.7세이다.⁹⁾ 그러나 12세 이하 유소년도 301건에 달했고, 14세 이하는 무려 563건에 달했다. 특히 한반도로 동원된 여성의 평균 연령은 13.28세로 더욱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유소년 동원은 일본의 공장법과 국제노동기구(ILO) 최저 연령 노동제한 규정[남녀 공통, 1919년 공업부문 협약 14세 미만, 1937년 협약 15세 미만]은 물론 1945년 4월 이전에 일본 당국이 스스로 규정한 법적 규정도 위배한 것이었다.¹⁰⁾

그렇다면 조선인 미성년자의 노무노동은 유소년에 국한했는가. 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성년노동은 성별과 무관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태는 알 수 없다. 개인적으로 확인한 70여 건의 사례만 있을 뿐이다.¹¹⁾

1) 조선의 아이들을 동원한 노무작업장

아태전쟁은 총력전이였으므로 제국 일본의 영역에 있는 인력과 물자, 자금을 동원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조선의 아이들이 있었다. 그러나 일본 아이들과는 무관했다. 일본 학계에서 전시기 미성년노동 연구가 거의 전무한 배경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속지주의도 아니었다. 조선에서 동원 연령을 위반한 경우는 일반적이었지만 일본에 거주했던 한반도일한인의 자녀들도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민족차별적 정책이라기 보다는 법령과 규정을 어긴 편법의 사례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조선 아이들은 편법이나 규정을 어겨도 괜찮다’는 방임이 담겨 있다. 조선의 아이들에게 적용한 정책도 있었다.

1941년 4월 19일, 조선총독부가 공포한 법은 ‘여자광부갱내취업허가제’를 가능하게 한 ‘광부노무부조규칙 특례 규정’이었다. 법 제정에 즈음해 4월 19일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는 조선총독부 식산국장과 내무국장의 담화가 실렸다.

9) 동원 당시 평균 연령은 호적 나이를 기재한 경우가 많아서 실제 연령보다 낮게 기재된 사례가 포함되어 있으며 ‘不詳’의 경우도 13건이 포함되는 등 정확한 수치는 산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생존자나 신고인이 직계 가족인 경우에는 실제 연령을 확인해 통계와 피해조사 결과에 반영하는 등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10) 1802년 영국에서 제정해 여러 나라에 확산된 공장법은 여성과 아동 노동시간 규제를 핵심으로 했다. 일본의 공장법은 1911년 공포되어 1916년부터 적용되었으나 조선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1923년 개정되었다. 공장법에는 14세 미만 유아의 노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있으므로 일본 본토에서 일본인 유소년 동원 사례는 찾기 어렵다.

11) 이 사례는 정혜경,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동원된 조선의 아이들』(섬앤섬, 2019)에서 찾을 수 있다.

“종래 광산의 갱내 취로는 원칙으로 14세 이상의 남자에만 한해 허가했고 여자의 갱내 취로는 금지되었던 것인데, 작금의 정세와 업계의 요망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광산에 대하여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얻어 만 16세 이상의 여자는 갱내에서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함에 따라 19일부로 부령으로 이를 발표하고 즉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었는데, 여자의 갱내 취로에 대하여는 보건, 위생, 풍기 등의 견지로부터나 또는 작업의 종류와 그 장소에 대하여 남자와 꼭 같은 취급을 하기는 곤란한 사정이 있다. 그럼으로 이 같은 특수사정에 대하여는 충분 고려하기로 되었는데, 하여간 이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현하 광산 노무 정세는 상당히 완화될 줄로 믿는 바이다.”

이 담화 내용에 따르면, 이미 14세 이상 남성이 갱에 들어가 일하는 법은 있었다. 1938년 5월 12일자로 제정 공포한 광부노무부조규칙이다. 이미 1938년 4월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해 일본이 전시체제기로 접어들자마자 ‘14세 이상 남자’가 막장에 들어가서 채탄을 하도록 법을 만들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1938년 5월 기준 동원 연령 기준은 어떠한가. 1944년 11월까지 최저연령은 만 14세였다.

- 국민근로보국대 실시요강(1938년 6월) : 만 20세~만 40세 남녀
- 국민근로보국협력령(1941년 11월) : 만 14세 이상~만 40세 미만 남성, 만 14세 이상~만 25세 미만 여성
- 노무조정령(1941년 12월) : 만 14세 이상~만 40세 미만 남성, 만 14세 이상~만 25세 미만 여성
- 국민근로보국협력령 개정(1944년 11월) : 만 14세 이상~만 60세 미만 남성, 만 14세 이상~만 40세 미만의 배우자 없는 여성
- 여자정신근로령(1944년 8월) : 만 12세 이상~만 40세 미만 여성
- 국민근로동원령(1945년 4월) : 만 12세 이상~만 60세 미만 남성, 만 12세 이상~만 40세 미만 여성

2) 한반도를 공출하라

일본이 태평양과 동남아로 침공한 것은 미국의 국력과 맞선다는 것을 의미했다. 개전 당시 미국의 국민 총생산은 일본의 12배 정도였고, 중화학공업과 군수산업의 기초가 되는 철강은 일본의 12배, 자동차 보유 수는 160배, 석유는 776배나 되었다.¹²⁾

12) 가토 요코 지음, 윤현명·이승혁 옮김, 『그럼에도 일본은 전쟁을 선택했다』, 360~365쪽

국민총생산과 자원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군수물자 생산을 늘리는 수밖에 없었다. 군수물자 생산을 위한 안정적인 자원 수급과 노무인력의 확보가 중요하게 되었다. 일본은 1938년 4월 국가총동원체제를 확립한 직후부터 양국의 군수물자 상황을 조율하며 대미전쟁에 대비했다.

<표 1> 전황에 따른 동원 정책의 변화

연도	조선의 동원 관련 법령	일본의 동원 관련 법령	전황
1938	5. 국가총동원법 적용 6. 근로보국대 결성	4. 국가총동원법 제정	5. 일본군, 중국 徐州 점령 소·일 충돌 7. 소련·조선·만주 국경에서 張鼓峰 사건 발발 10. 일본군, 廣東·武漢 점령
1939	7. 종업자고입제한령 시행규칙 공포 9. 국민징용령, 국민징용령 시행규칙	7. 국민징용령, 종업자고입제한령 공포 조선인 노무자 내지 이주에 관한 건(내무성 후생성 차관 정책 통첩)	2. 일본군, 중국 하이난섬(海南島) 상륙 7. 노몬한 사건 발발(소·일 충돌) 9. 독일, 폴란드 침공 (유럽의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영·불, 대독선전 포고
1940	11. 선원징용령 적용 국민징용령 개정 적용	2. 육군통제령, 해군통제령 공포 9. 선원징용령 제정 10. 국민징용령 개정	9. 삼국동맹 조인 9. 일본군 북부 불령 인도차이나 진주
1941	3. 국민징용령 개정 적용 11. 국민근로보국협력령, 해군공원징용규칙 적용 12. 국민징용령 개정 적용	3. 국방보안법 공포 11. 국민근로보국협력령, 해군공원징용규칙 제정 공포 12. 노무조정령 제정 공포, 국민징용령 개정	4. 독소전 개시, 소일불가침조약 조인 12. 일본 대미영선전포고(태평양전쟁 개시) 일본군, 진주만·말레이반도 공격, 광과 홍콩 점령
1942	1. 노무조정령 시행규칙, 조선군사령 공포 3. 선원징용령 개정 적용	1. 학도근로동원 개시 2. 전시형사특별법 공포 3. 선원징용령 개정	3. 일본군, 버마 점령, 뉴기니아 상륙 4. 18. 미 육군기 16기, 도쿄·나고야·고베 등 첫 공습 6. 미드웨이해전 (戰局 전환의 계기) 8. 미군, 과달카날섬 상륙 12. 뉴기니아 바사부아의 일본군 전멸

1943	9. 국민징용령 개정, 조선에 적용	3. 응징사복무규율 공포	1. 뉴기니아 부나의 일본군 전멸 5. 미군, 앳츠섬에 상륙 11. 미군, 솔로몬군도의 부겐빌섬에 상륙 길버트제도의 마킨, 다라와섬에 상륙
1944	2. 응징사복무규율 공포 5. 국민징용령 개정, 조선에 적용 8. 학도근로령 실시	1. 제1회 지정군수회사 2. 국민징용령 개정 5. 피징용자등 근로원호강화(각의결정) 노무조정령 및 국민직업능력신고령개정 8. 여자정신근로령 공포 12. 제2회 지정군수회사	2. 미군, 마셜제도 과자린, 리에트섬에 상륙 6. 미군, 마리아나제도 사이판섬 상륙. B-29 北九州 첫 공습 7. 미군, 괌과 티니안에 상륙 10. 미군, 오키나와 공습 필리핀 중부의 레이티섬에 상륙 11. 미군 B-29 약 70기, 도쿄 첫 공습. 이후 일본 전역 공습
1945	1. 군수총족회사령 공포 시행 2. 선원동원령 시행규칙 3. 국민근로동원령 시행규칙 6. 학도근로시행규칙 개정. 국민의용대 조직 요강 발표	1. 선원동원령, 군수총족회사령 공포 3. 국민근로동원령 제정 공포 5. 전시요원긴급요무령 공포 6. 의용병역법 공포 시행	1. 미군, 필리핀 루손섬 상륙 2. 미군, 마닐라 시내 진입 미군 함재기 1200기가 일본 관동 각지 공격 미군, 이오지마 상륙 3. 미군, 도쿄대공습 오사카 공습 4. 미군, 오키나와 본섬 상륙 6. 오키나와 일본수비군 전멸 8. 미군, 원자폭탄 투하 소련 참전, 항복 선언

당국은 전황에 따라 인력과 물자 자금동원의 종류와 규모를 늘려나갔다. 1940년 10월에는 선원징용령을 공포(1940년 10월 19일 칙령 제687호)하고 11월 10일부터 조선에도 적용했다. 1941년 8월 29일 일본 각의는 노무긴급대책요강을 결정해 근로 보국정신을 확립하고 동원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1941년도는 조선에 배당한 항공기와 탱크, 선박 제조에 필수적인 철강(보통강강재, 특수강)과 주석, 석탄, 알루미늄, 공업용 소금, 쌀의 할당량이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해였다.¹³⁾

13) 조선의 물자동원 품목과 공출량에 대해서는 안자코 유카, 「조선총독부의 총동원체제(1937~1945) 형성 정책」, 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참조

1941년 12월 대미전쟁 발발 후 전황은 일본 당국의 기대와 달리 흘러갔고, 노동력의 수요도 급증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반도 민중과 자원의 공출은 심해졌다.

< 표 2 > 한반도에 부과한 물자동원 내역	
근거	내용
국가총동원법 (1938.4.공포) 총동원물자 법조문	①군용물자(병기·함정·탄약 기타) ② 피복·식량·음료·사료 ③ 위생용물자(의약품·의료기계기구 등) ④ 운수용 물자(선박·항공기·차륜車輪 등) ⑤ 통신용 물자 ⑥ 토목건축용 물자 ⑦ 조명용 물자 ⑧ 연료 및 전력
제1차 생산력확충계획 (1938~1941년)	■ 조선의 광물자원(일본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는 철광석과 특수광물 등의 군수자원) 획득에 주목 * 조선총독부 식산국(광산과·수산과·상공과), 농림국(농무과·축산과·임업과) 담당 ■ 조선의 생산력확충계획의 주된 산업은 경금속, 비철금속 등의 금속공업과 철강이라 분류된 광공업, 석탄, 철도차량, 전력, 석유 및 대용품산업
제2차 생산력확충계획 (1942~1943년)	■ 1941년 7월 이후 선박수송력이 물자동원계획의 큰 틀을 결정했고, 배선(配船) 계획화도 동시에 검토했으나 1942.10 물동계획 실행이 선박부족으로 차질을 빚자 육상수송에 주력해 대륙물자의 중계수송, 조선철도를 이용한 육송 등으로 계획을 수정 ■ 조선은 생산확충 품목의 22%를 담당
제3차 생산력확충계획 (1944~1945)	■ 조선의 생산력확충계획은 1943년 90% 달성, 1944년 상반기 109%의 성과를 올림 * 1944.4.부터 실시한 군수생산책임제와 중요광물 중점증산정책, 군수회사법 시행(조선에서는 1944.10 시행)의 결과
생산책임제요강 (1944.3.31)	■ 전매분야(소금·간수·연초·아편·인삼) 추가

일본 당국이 조선에 부여한 물자동원의 품목은 식량과 광물자원, 철강, 석유 및 대용품, 전매 분야, 선박(물자수송용 잠수함)까지 다양했고, 공출량도 매년 증가했다. 이 같이 매년 늘어난 물자동원의 품목과 품목별 공출량의 증가는 한반도 민중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직종별로 보면, 한반도 내 관알선과 근로보국대는 토건의 비중이 높았다.¹⁴⁾

14) 김윤미, 「총동원체제와 근로보국대를 통한 ‘국민개로’ - 조선에서 시행된 근로보국대의 초기 운용을 중심으로(1938~1941)」, 『한일민족문제연구』 14, 2008 참조

< 표 3 > 한반도 내 노무동원 경로별 규모

연도별	국민징용	관알선						근로보국대, 모집
		군수	광업	교통	공업	토건	계(관알선)	
1938년		-	41	34		19,441	19,516	74,194
1939년		-	2,735	647		41,907	45,289	113,096
1940년		-	2,714	901		57,912	61,527	170,644
1941년		1,085	1,494	646		43,662	46,887	313,731
1942년	90	1,723	4,943	287		42,086	49,039	333,976
1943년	648	1,328	11,944	186	5,316	40,150	58,924	685,733
1944년	173,505	4,020	14,989	-	3,214	54,394	76,617	2,454,724
1945년	129,581	4,312	2,071	252	-	37,628	44,263	1,636,483*
소계	303,824	12,468	40,931	2,953	8,530	337,180	402,062	5,782,581
계	6,488,467							

* 일본 정부 추정치

大藏省 管理局 編, 1947, 『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歴史的調査』 통권 제10책, 朝鮮篇 제9분책, 69쪽, 71쪽; 허수열, 1985, 「조선인 노동력의 강제동원의 실태」, 차기벽 엮음, 『일제의 한국식민통치』, 정음사

매년 한반도 내 동원이 늘어나게 된 것은 전황의 추이에 따라 한반도 외 송출자가 증가하면서 조선의 공출량을 감당해야 할 대상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표 4> 한반도 외 노무동원 규모

(단위 : 명, 만주는 호수)¹⁵⁾

연도/지역	국민징용		모집, 관알선				연도별 인원
	일본	남방	일본	남사할린	남양군도	만주	
1939			38,800	3,301			42,101
1940			54,954	2,605	814		58,373
1941	4,895		53,492	1,451	1,781	1,058	62,677
1942	3,871	135	121,320	5,945	2,083	1,554	134,908
1943	2,341		149,730	2,811	1,253	1,046	157,181
1944	201,189		379,747				580,936
1945	9,786						9,786
소계	222,082	135	798,043	16,113	5,931	3,658	총계 1,045,962

15)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2016, 『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129쪽 수정

大藏省 管理局 編, 「戦争と朝鮮統治」, 『日本人の海外活動に関する歴史的調査』 통권 제10책
 朝鮮篇 제9분책, 1947, 69쪽, 71쪽
 厚生省 調査局, 『朝鮮經濟統計要覽』, 1949년판
 朝鮮總督府, 「第85回 帝國議會説明資料」, (『조선근대사료연구집성』 제4호 수록)
 近藤劬一 編, 「最近に於ける朝鮮の勞務事情」, 『太平洋戦下の朝鮮(5)』, 友邦協會, 1964, 170쪽
 朝鮮總督府, 『朝鮮事情』 1941~1943년 각년도판

일본 전시체제기 초기의 인력동원은 성인 남성 중심이었으나, 전황의 악화로 동원관련법에 규정한 성별과 연령은 확대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조선인 미성년동원 사례가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다.

3. 직종별 어린이 노무동원 실태

2015년 초, 일본의 세계유산등재를 둘러싸고 강제동원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때, 국내 언론사와 일본 우익계 신문사에 보도자료를 보낸 국내 연구자가 있었다. 내용의 골자는 ‘조선인 강제동원은 없었다’와 ‘군함도에 소년 광부는 없었다’였다. 주인공은 2019년 『반일종족주의』의 공동저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의 주장과 달리 군함도에는 소년 탄부가 있었고, 일본과 조선, 남사할린, 남양군도 등 제국 일본 영역의 노무동원 작업장에는 조선의 어린이가 있었다. 이들은 탄광산 뿐 아니라 토목건축작업장, 군수공장, 집단농장에 동원되었다. 그러나 『반일종족주의』의 저자 등 역사부정론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은 없었다’고 부정한다. 그 이유는 문헌자료의 부재 때문이다.

문헌자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대표적인 자료는 명부이다. 노무동원 관련 명부 가운데 연령이나 생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에서 미성년자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다. 현재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강제동원 관련 명부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가능한 작업이다. 그러나 조선인 노무동원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명부에서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명부는 제한적이므로 미성년자의 존재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형 대신 동원되어 형의 이름으로 명부에 등재된 경우를 감안하면, 명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미성년자는 극히 제한적이다. 명부 외 또 다른 자료는 학적부이다. 현재 확보한 학적

부 역시 제한적인데다가 취학아동으로 국한된 자료이므로 비취학아동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

위원회가 피해자로 판정한 노무동원 피해자 148,961명 가운데에도 다수의 미성년 노무자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가 구축한 피해진상관리시스템이나 자료관리 시스템은 행정망에서 극히 일부의 공무원만이 접근 권한을 가진 비공개 시스템이다.

이같은 문헌자료의 한계를 보완하는 자료는 비문헌자료(사진, 이미지, 구술 등)이다. 2005년 위원회가 출간한 한국 정부 최초의 강제동원 구술기록집 『당꼬라고요』 표지사진에는 어린 탄부들의 모습이 실려 있다. 위원회가 수집한 피해당사자의 사진에서도 어린이를 찾을 수 있다. 2017년 여름에 작고한 일본 다큐멘터리 기록가 하야시 에이다이(林えいだい)가 남긴 사진집(청산되지 않은 쇼와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에도 ‘소년 갱부’라는 소제목 아래 사진이 있다. 사진에는 ‘위험이 적지 않은 노천 굴에서 일하는 소년 갱부’ ‘다카마쓰탄광 훈련소의 소년 갱부들’ 등 설명문과 함께 직접 찾아가 만난 당시 경험자들의 이야기도 실려 있다. 사진 속 소년들은 늘 맨 앞줄에 앉아 있다. 험령한 국민복 속에 앓되고 조막만한 얼굴을 한 아이들. 소년 갱부의 이름을 새긴 석불 대좌의 사진도 있다. 사망한 아이들을 기리는 석불이다. 그 외 회고록 수기나 구술기록집을 통해 조선인 미성년 노무자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다.¹⁶⁾ 그러나 역시 실제 경험자의 일부에 해당할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찾아낸 사례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찾은 사례는 구술기록, 위원회가 발간한 구술기록집과 경험자 관련자의 회고록, 기타 수기 및 소송기록, 위원회의 피해조사 결과(언론 보도자료 작성용, 국제학술대회 발표 준비용)를 근거로 한 70여 건의 사례이다. 일부 사례에 불과해 학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는 부족해 대중교양서로 출간했다.¹⁷⁾

이러한 한계에도 이를 토대로 살펴본 특성은 첫째, 성년 남성 기준으로 작동하는 노동시스템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노동재해와 공습피해 등에 매우 취약했고, 성폭력과 물리적 폭력 상황에 노출되었다. “막장에서는 두들겨 맞는 날이 항다반사였다. 오줌 때문에 두들겨 맞고, 곡괭이질 때문에 두들겨 맞고,

16) 이상업이 지은 『사자를 넘어』(소명출판, 2016)에는 미쓰비시광업 가미야마다(上山田)탄광에 동원된 50여 명의 소년징용부대원의 경험을 포함하고 있고, 松本成美의 『母と子でみる滑走路と少年土工夫』(草根出版會, 1996)에도 홋카이도 게네베쓰(計根別) 육군비행장공사장에 동원된 조선 소년들 20여명의 존재를 소개하고 있다.

17) 정혜경,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동원된 조선의 아이들』, 섬앤섬, 2019

광차 때문에 두들겨 맞고, 감독들의 곡괭이자루는 사사건건 구실을 잡아 춤을 추었다. 지독한 구타였다.”(이상업, 『사지를 넘어』, 40쪽) 그러나 성인과 달리 저항하지 못했다. 1939년 이후 일본지역에 동원된 조선인 노무자 1,020,125명 가운데 약 10%에 달하는 10만 8,978명이 파업과 태업에 참가했고, 취역거부나 폭동 등 적극적인 저항 사례도 그치지 않았다.¹⁸⁾ 그러나 현재 미성년자의 현지 탈출 사례는 찾을 수 있으나 참여 사례는 찾기 어렵다. 12세 나이에 일본 규슈 오이타현 일본광업(주) 소속 사가노세키(佐賀關)제련소로 동원된 소년(주덕중)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장애자로 만드는 방법이었다. 어린이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존을 위한 ‘자기학대’였다.

둘째, 광복 후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한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물론 어린 시절의 외국 경험(?)을 광복 후 한국 사회의 질곡을 벗어나는데 적극적인 기회로 삼은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 경험자들은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귀가 후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 외에 유소녀의 경우에는 자살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원인은 현장 성폭행이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의 경우에는 구조적 모순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원인을 자기에게 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선생님의 말만 듣고, 부모님을 속이고 갔다는 자책감’과 광복 후 겪는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을 ‘부모님을 속인 대가’로 생각하는 체념론은 평생 이들의 삶을 짓눌렀다.¹⁹⁾ 어린 시절 5회의 징용 경험(한반도 내 4회, 일본 1회)을 가진 남성은 사회에 대한 극단적인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은 전체 일생을 기준으로 보면, 짧은 순간일 수 있으나 이들의 트라우마는 성인에 비해 깊음을 알 수 있다.

70여 건의 사례 가운데 직종별 사망 등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8) 조선인 노무자의 저항에 관해서는 강만길, 「침략전쟁기 일본에 강제동원된 조선노동자의 저항」, 『한국사학보』2, 1997; 이상의, 『일제하 조선의 노동정책 연구』, 해안, 2006, 322~368쪽; 변은진, 「일제침략전쟁기 조선인 '강제동원' 노동자의 저항과 성격 : 일본 내 '도주' '비밀결사운동'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18, 2002; 노영중, 「일제말기 조선인의 北海道지역 강제연행과 거부투쟁」, 『한국근현대사연구』17, 2001; 정혜경, 「일제말기 경북지역 출신 강제동원 노무자들의 저항」, 『한일민족문제연구』25, 2013; 정혜경, 「일제말기 강제로 동원된 조선인의 저항」, 『재일코리아운동의 저항적 정체성』, 도서출판 선인, 2015

19) 정혜경, 「해방 이후 강제연행 생존자의 사회적응 과정」, 『한국근현대사연구』29, 2004 참조

1) 직종별 사망자 사례

■ 군수공장(조선) 사망자

병주 : 1929년 9월 전북 임실에서 출생. 1943년 8월, 함남 흥남에 있는 일본질소비료(주) 소속 본궁공장(군수회사로 지정)에 동원(13세). 동원된 지 7개월 만인 1944년 3월, 공장 부속 병원에서 사망. 유해 봉환에 대해서는 알려진 내용이 없음. *사망 당시 14세

용철 : 1929년 8월 충남 연기에서 출생. 1943년 12월, 함남 흥남에 있는 일본질소비료(주) 소속 본궁공장(군수공장으로 지정)에 동원(13세). 동원된 지 11개월 만인 1944년 12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현장에서 사망. 유해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음. *사망 당시 14세

상룡 : 1927년 12월 전북 김제 출생. 1943년, 함북 길주 소재 북선제지화학공업(주) 소속 길주공장에 동원(15세). 북선제지화학공장은 미쓰이三井 계열의 회사. 1944년 10월, 회사 의무실에서 사망. 유해 봉환에 대해서는 알려진 내용이 없음. *사망 당시 16세

필용 : 1924년 2월 전북 김제에서 출생. 1940년, 함남 흥남에 있는 일본질소비료(주) 소속 흥남비료공장(군수회사로 지정)에 동원(15세). 1941년 9월, 유독 가스에 중독되어 광주전남도립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사망. 유해 봉환 *사망 당시 16세

영모 : 1927년 황해도 신계에서 출생. 1943년 5월, 함남 흥남에 있는 일본질소비료(주) 소속 흥남비료공장(군수회사로 지정)에 동원(15세). 동원 후 10개월만인 1944년 4월, 공장에서 사망. 유해 봉환 *사망 당시 16세

중열 : 1927년 5월, 전남 해남에서 출생. 1944년 4월, 함북 경흥 소재 군수공장에 동원(16세). 동원 후 2개월만인 1944년 7월에 철망을 메고 옥상에 올라가다가 전선에 감전되어 추락사. 유해 봉환 *사망 당시 16세

순남 : 1931년(호적은 1933년) 8월 경북 상주에서 출생. 10세에 조선방직 부산공장에 동원. 조부가 이장이었는데, 인원 할당을 채우지 못해 할 수 없이 손녀를 공출. 공장에서 위독했으나 귀가조치를 하지 않아 1944년 12월 27일, 부산 부평정 옥천병원에서 사망. 사망원인은 알 수 없고 유해도 회사측이 처리
* 사망 당시 12세

옥련 : 1933년 12월 충남 태안군에서 출생. 1944년 8월 조선방직 부산공장에 동원, 10개월 만인 1945년 6월 28일 기숙사에서 사망. 사망원인과 유해 봉환 여부 알 수 없음 * 사망 당시 11세

종해 : 1925년 경북 안동에서 출생. 1938년 함경북도 청진의 대일본방직(주) 청진공장에 동원. 1년 후 귀가조치로 귀가했으나 1942년 4월 자살. 성폭행 후유증으로 추정
*사망 당시 15세

■ 탄광산(조선) 사망자(남성)

- 낙천: 1931년 4월 전남 함평 출생. 1943년 1월, 함북 회령군 이와무라岩村광업(주) 소속 유선탄광에 동원(11세). 동원 후 22개월만인 1944년 12월 20일, 갱내에서 사망. 유해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음. *사망 당시 12세
- 두섭: 1926년 12월 충북 옥천 출생. 함북 경원군 소재 조선유연탄(주) 소속 용덕 탄광에 동원. 동원 일자는 알 수 없음. 조선유연탄(주)은 아소광산·동양척식회사 아소광산·동양척식회사·북산탄광·동양척식광업이 설립한 회사로 군수회사로 지정. 1941년 11월, 갱내 사고로 사망. 유해 봉환 *사망 당시 14세
- 용희: 1930년 2월 전남 고흥 출생. 1944년 8월, 함북 경흥군 소재 일본질소비료(주)가 설립한 조선인조석유(주) 소속 아오지탄광(군수회사 지정)으로 동원(13세). 동원 후 11개월 만인 1945년 7월 20일, 갱내 사고로 사망. 유해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음. *사망 당시 14세
- 상준: 1928년 1월 전북 김제 출생. 1943년 2월, 북한 지역의 이름을 알 수 없는 탄광에 동원(14세). 동원 후 2개월 만인 1943년 5월, 갱내 사고로 사망. 유해 봉환 *사망 당시 14세
- 한성: 1927년 2월 전남 영광 출생. 1942년 1월, 큰형을 대신해 북한 지역의 이름을 알 수 없는 탄광에 동원(14세). 동원된 지 4개월만인 1942년 5월, 갱내 붕괴로 인한 낙반 사고로 사망. 유해 봉환 *사망 당시 14세
- 수남: 1926년 7월 전북 정읍 출생. 1941년 2월, 함남 단천군 소재 탄광에 동원(14세). 동원 후 5개월만인 1941년 7월, 갱내 압사 사고로 사망. 유해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음. *사망 당시 14세
- 천경: 1927년 3월 충북 괴산 출생. 평남 개천군 소재 일본제철광업(주) 소속 개천철산(군수회사 지정)에 동원. 동원 일자는 알 수 없음. 1943년 12월, 갱내 사고로 사망. 유해 봉환 여부는 알 수 없음. *사망 당시 15세
- 영구: 1925년 1월 충북 보은 출생. 1938년 7월 황해도 봉산군 소재 일본제철 계열 메이지明治광업(주) 소속 사리원탄광(군수회사 지정)에 동원(12세). 동원된 후 2년이 지난 1941년 2월, 제1갱에서 사고로 사망. 유해 봉환 *사망 당시 15세
- 우선: 1926년 3월 전남 나주 출생. 1940년 함남 단천군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광산에 동원(13세). 동원된 후 2년이 지난 1942년 9월, 갱외 작업 중 낙하물체에 머리를 맞아 즉사. 유해는 고향에 돌아오지 못했음. *사망 당시 15세
- 우석: 1928년 2월 전남 영암 출생.
1942년 평남 순천군 소재 조선무연탄(주) 소속 신창 탄광에 동원(13세). 조선무연탄(주)은 미쓰비시광산·동양척식회사·메이지탄광·미쓰이물산·동척광업이 설립한 회사로 군수회사로 지정. 동원된 후 2년이 지난 1944년 12월, 제4갱에서 사고로 사망. 유해 봉환 *사망 당시 15세
- 영기: 1928년 5월 충남 홍성 출생. 1942년 10월, 함북 경흥군 소재 일본질소비료(주) 계열 조선인조석유(주) 소속 아오지탄광(군수회사로 지정)로 동원(13세). 동원된 후 2년이 채 못 된 1944년 6월, 갱내 사고로 사망. 유해 봉환 *사망 당시 15세

동환 : 1927년 5월 전북 고창 출생. 1942년 함북 경성군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탄광에 동원(14세). 동원된 1년 후 1943년 6월, 갯내 붕괴사고로 사망. 유해 봉환 여부는 알 수 없음. *사망 당시 15세

종현 : 1928년 2월 전북 장수 출생. 1944년 2월 평남 개천군 일본제철광업(주) 소속 개천철산(군수회사로 지정)에 동원(15세). 동원된 지 7개월만인 1944년 10월, 현장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사망. 유해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음. *사망 당시 15세

향 : 1927년 12월 전북 정읍 출생. 1943년 1월 평북 강계군 소재 장연 탄산으로 동원(당시 15세). 동원 후 3개월만인 1944년 6월, 갯내 사고로 사망. 유해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음. *사망 당시 15세

■ 토건작업장(조선) 사망자

순하 : 1931년 3월 전남 신안에서 출생. 1943년 2월, 평북 강계군 소재 만포선 철도공사장에 동원(11세). 동원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만포읍 문곡동 철도의무실에서 사고로 사망. 사고 내용은 알 수 없으며, 유해 봉환 여부도 알 수 없음 *사망 당시 11세

단오 : 1932년 5월 전남 해남에서 출생. 1945년 3월 전남 해남군 소재 아사다淺田화학공업(주) 소속 옥매광산에 동원되었다가 다시 제주도 대정읍 군사시설공사장에 동원(12세). 그 해 8월 20일, 해방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 청산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선박화재사고로 사망. 유해는 찾을 수 없음 *사망 당시 12세

세영(여) : 1931년 3월 경북 문경에서 출생. 1944년 12월 14일, 마성국민학교 재학 중 문경군 마성면 신사神社조성작업에 동원되었다가 흙더미 매몰사고로 사망. 유해 봉환 *사망 당시 12세

유석 : 1930년 9월 경북 달성에서 출생. 1943년 10월, 경북 달성군 소재 동촌비행장공사장에 동원(12세). 동원 후 5개월만인 1944년 3월, 비행장 정문의 공사장으로 이동 중 사망. 사고원인을 알 수 없으며 유해는 가족에게 봉환되었음 *사망 당시 13세

명중 : 1928년 2월 전남 함평 출생. 1942년 6월, 함남 단천군 소재 공장건설공사장에 동원(13세). 동원 후 1개월만인 7월 16일, 사고로 공사장 함바에서 사망. 사고원인은 알 수 없으며 유골은 봉환되지 않았음 *사망 당시 13세

형충 : 1929년 1월 전남 무안 출생. 1943년 2월, 전남 무안 소재 망운비행장에 동원(13세). 동원 후 3개월 만인 5월, 배식부족을 항의하다가 ‘구보다’라는 관리인이 가한 구타로 사망. 유해 봉환 *사망 당시 13세

선영(여) : 1930년 12월 경북 문경에서 출생. 1944년 12월 12일, 마성국민학교 재학 중 마성면 신사조성작업에 동원되었다가 14일 흙더미 매몰사고로 사망. 유해 봉환 *사망 당시 13세

노운 : 1929년 9월 충남 논산에서 출생. 1941년 2월, 논산 소재 탑정저수지공사장에 동원(13세). 동원 후 2개월만인 4월 15일, 사고로 사망. 사고원인은 알 수 없고, 유해는 현지에 안장했음 *사망 당시 13세

동술 : 1929년 6월 전남 해남에서 출생. 무안군 망운면 소재 육군작업장에 동원. 일시는 알 수 없음. 1944년 11월 17일 사고로 사망. 유해 봉환 *사망 당시 14세

수홍 : 1926년 10월 전남 화순에서 출생. 함북 청진부 서항 소재 토목국 소속 공사장에 동원. 일시는 알 수 없음. 1941년 12월 5일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 사고원인은 알 수 없으며 유해 봉환 여부도 알지 못함 *사망 당시 14세

정구 : 1930년 1월 경남 고성에서 출생. 1944년 7월, 경남 진해군 소재 군사시설물 방공호 공사장에 동원(13세). 1945년 8월 8일에 발생한 붕괴사고로 들것에 실려 집으로 돌아온 후 치료 중 8월 18일 사망. 유해는 가족들이 안장했음 *사망 당시 14세

춘배 : 1929년 8월 전남 해남에서 출생. 1944년 9월 전남 해남군 소재 아사다화학공업(주) 소속 옥매광산에 동원(13세). 광산에서 다시 제주도 대정읍 군사시설공사장에 동원되었다가 1945년 8월 20일, 해방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 청산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선박화재사고로 사망. 유해는 찾을 수 없음 *사망 당시 14세

외생 : 1929년 4월 경남 산청 출생. 1944년 3월 부산부 전포리 소재 미야케구미三宅組 토취장에 동원(13세). 동원 후 4개월만인 1944년 8월 20일, 현장에서 사고로 사망. 유해 봉환 *사망 당시 14세

건수 : 1927년 5월 전북 진안 출생. 1941년 함북 부령군과 만주에 걸친 청라선 철도공사장에 동원(13세). 1942년 5월 터널공사 중 전염병으로 사망. 유골은 봉환하지 못했음 *사망 당시 14세

성만 : 1928년 3월 충북 청원 출생. 1943년 2월 평북 강계군 소재 강계수력발전소 하자마구미間組 공사장에 동원(14세). 동원 후 4개월만인 7월 20일 사고로 사망. 사고원인은 알 수 없고, 유골은 봉환하지 못했음 *사망 당시 14세

석기 : 1928년 3월 전북 익산 출생. 1943년 6월 전북 임실 소재 조선전업(주)이 발주한 섬진강댐공사장에 동원(14세). 조선전업(주)은 일본질소비료(株)가 설립한 회사. 동원된 직후인 7월 19일 현장사고로 사망. 사고원인은 알 수 없으며 유해는 봉환 *사망 당시 14세



13세 조선 소녀가 동원되었던 나라(奈良)현 덴리(天理)시 해군 야나기모토(柳本) 비행장 방공호

2) 기타 사례

■ ‘남양군도’

봉선 : 1928년 경북 포항 출생. 1939년(11세) 부모님 등 가족 7명이 포나페로 송출. 포나페에서 척식회사인 남양흥발(주) 소속으로 카사바와 사탕수수 농장에 동원. 2년 후 티니안 설탕공장에 동원, 1944년 가을 수용소 생활 후 1946년 귀환

금복 : 1936년 전북 김제 출생. 1939년 부모님과 여동생과 함께 티니안 송출. 6세부터 남양흥발(주) 소속 티니안 제당소 아기간Aguiguan 농장에 동원. 1일 10시간 노동. 1946년 귀국

덕순 : 1934년 전북 임실 출생. 1940년 가족과 함께 포나페섬으로 동원. 카사바농장에 동원되었다가 2년 후 티니안 사탕수수 농장(남양흥발 소속) 동원. 일본의 대미전쟁 후 하고이Hagoi 비행장 공사장에 동원되어 일하다가 파편을 맞아 부상을 입었으나 치료받지 못한 채 1946년 귀국

복순 : 1928년 전북 임실 출생. 1939년 포나페 제당공장에 동원(10세). 1944년 미군이 남양군도를 공격하자 회사의 지시로 군부대 병원에서 군인들 간호하던 중 폭탄 파편을 맞아 한쪽 눈을 다쳤으나 치료는 받지 못해 실명



13세 조선 소녀가 동원되었던 나라(奈良)현 덴리(天理)시 해군 야나기모토(柳本) 비행장 방공호

■ 미성년 형제의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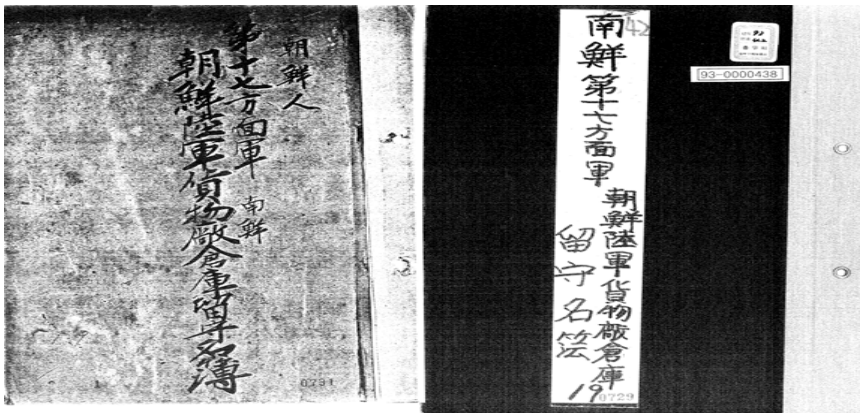
정열 3남매 : 전북 옥구에서 태어난 정열(1930년 6월생)은 1944년 2월, 전남 광주부의 방적공장으로 동원(12세). 이미 큰오빠는 규슈 탄광으로 갔다가 사망해 화장한 재만 돌아왔고, 둘째 오빠는 북한의 탄광으로 징용 간 상태. 정열은 1945년 8월 귀가했으나 공장에서 얻은 이질로 10월에 사망. 돌아온 둘째 오빠로 탄광에서 얻은 결핵으로 귀가 후 바로 사망

상렬과 상우 : 1933년 12월 경기도에서 태어난 상우는 1945년, 면사무소에서 ‘지게지고 포탄 나르는 일’ 시킨다고 데려간 후 지금까지 행방불명. 그의 형 상렬도 1944년 징용(필리핀 제3선박수송사령부 소속)을 나갔으나 행방불명. 호적상 생존자

■ 일본에서 공장법과 학도근로대 규정을 모두 어긴 사례

1931년 전남 순천에서 태어난 성례는 아버지를 따라 히로시마(広島)로 이주해 학교를 다녔다. 아버지는 지붕의 기와를 이는 기술자였다. 1944년 10월, 13세의 나이로 미쓰비시중공업(주) 히로시마조선소에 동원되었다. 당시 성례는 학도근로대 동원 대상이 아니었다.

학도근로대란 1944년 8월 23일 일본 정부가 공포한 학도근로령에 따라 실시한 제도로써 학도근로령은 제1조에 ‘국가총동원법 제5조 규정에 준하는 학도’를 대상으로 동원하도록 했고, 시행의 근거는 국민근로보국협력령(만 14세 이상 ~ 60세 미만의 남성과 만 14세 이상 ~ 40세 미만의 배우자 없는 여성)에 따르도록 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국민학교 6학년이었던 소녀는 연령 미달이었으나 또래보다 키가 크다는 이유로 오빠 대신 동원되었다. 기숙사에 묵으며 일을 하던 중 1945년 8월 6일 원자폭탄 피폭 당시 폭심지에 있던 공장에서 사망했다.



송영홍자의 이름이 등재된 유수명부 표지

■ 군무원에서 여자근로정신대가 된 사례

육군공원 ‘송영홍자(松永弘子)’. ‘남선 제17방면군 조선육군화물창 조선육군화물창 창고부대’ 유수명부(留守名簿)에 기록된 조선 소녀의 이름이다. 1932년 2월,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 경성부 종로구 청운정(현재 청운동)에 살던 소녀는 10세인 1943년 9월 육군공원(工員, 일본군이 운영하는 직할공장에서 일하는 민간인)이 되었다.

조선육군화물창(貨物廠)의 주력 부대는 경성에 있었고, 일부 부대는 대전에 있었는데, 군사령부 등 고급 사령부에 소속되어 무기와 탄약 등 물자 보급을 담당하는 부대였다. 창씨이름 송영홍자의 본명은 *오순이다. 이 아이가 무슨 연유로 무기와 탄약을 만드는 육군공원이 되었는지 알 수 없다. 그런데 1945년 1월 11일 공원에서 해제된 소녀는 다시 여자근로정신대가 되어 후지코시(不二越)강제 도야마공장으로 동원되었다. 이곳에서 선반 기계를 작동하며 총구와 총알을 만들다가 광복을 맞았다.

4. 연구제언

2011년 5월, 일본 고베(神戸)에서 열린 ‘강제동원진상규명전국연구집회’에서 발표한 강제동원 사망자 현황 논문(전시체제가 한반도 내 인력동원(노무동원) 피해 : 사망자 현황을 중심으로)에 대해 일본 연구자들은 “놀라운 일”이라고 표현했다. ‘일본은 공장법이 있어서 어린애들은 동원하지 않았는데, 이런 사례는 처음 접’한다고 했다. 발표자였던 나도 미성년자 동원을 중심 내용으로 발표문을 준비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놀라웠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인 미성년 강제동원은 현재 연구는 물론, 기본적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주제이다. 그러나 사진과 구술, 회고록과 위원회 조사결과를 통해 아시아태평양전쟁기간 중 조선인 미성년 강제노동은 명확히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인 미성년 강제동원은 명백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 사항이다. 당시 일본은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해 있었고, 1919년부터 1945년까지 ILO협약에 비준했다. 일본이 비준한 협약 가운데 ILO가 정한 미성년 노동 제한 규정은 1937년에도 15세 미만이었다. 물론 그 이후에 노동제한연령은 더욱 높아졌다. 1919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이 비준한 ILO협약 가운데 주목되는 것들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날짜는 일본 비준일)¹⁾

1) 영어 조약문 및 현황은 ILO 홈페이지 Normlex <http://www.ilo.org/dyn/normlex/en/f?p=1000:12000:::NO:::> 일어 조약문 및 현황은 <http://www.ilo.org/tokyo/ilo-japan/conventions-ratified-by-japan/lang-ja/index.htm>. 한국의 경우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는 ILO 관련 정보가 없고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입 조약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본문의 협약문 번역에 있어서 외교부의 한글 번역문이 없는 경우에도 유사한 협약의 번역문을 참조하였다. 조시현 제공

1. 1919년 공업에 사용될 수 있는 아동의 최저연령을 정한 조약(ILO 제5호 협약, 최저연령(공업)협약으로 약칭): 1926.8.7.
2. 1920년 해상에서 사용될 수 있는 아동의 최저연령을 정한 조약(ILO 제7호 협약, 최저연령(해상)협약으로 약칭): 1924.6.7.
3. 1921년 농업에 사용될 수 있는 아동의 최저연령에 관한 조약(ILO 제10호 협약, 최저연령(농업)협약으로 약칭): 1923.12.19.
4. 1921년 석탄부 및 화부로서 사용될 수 있는 연소자의 최저연령을 정하는 조약(ILO 제15호 협약, 최저연령(석탄부 및 화부)협약으로 약칭): 1930.12.4.

이러한 부문별 규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1930년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²⁾이다.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열린 파리 평화회담에서 설립이 결정된 ILO는 보편적 노동기준의 확산을 위하여 거의 200개에 달하는 협약들을 채택하고, 회원국들은 이를 비준하여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1930년 채택되어 1932년 발효된 제29호 강제노동협약은 그 자체가 ILO의 8개 기본협약 중 하나로 중요도가 높다. 또한 강제노동협약은 총 178개국³⁾이 비준하였을 정도로 보편적 최소 노동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 ILO 강제노동협약 제11조 제1항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나이가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신체 건강한 성인남자만 강제노동에 동원할 수 있다”고 규정해 미성년자와 여성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1932년에 ‘1930년 ILO 강제노동협약’을 비준했다. 그러나 앞에서 소개한 사례를 통해 일본 당국은 강제동원 관련법에서나 관행에서나 모두 이 기준을 위반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인 미성년 강제동원은 강제성의 가장 명확한 근거이자 전시 중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한국 사회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조선인 미성년 강제동원 피해자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다. 현지 사망자 가운데 많은 부분

2) 고용노동부 > 정책자료실 > ILO 주요협약.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1502697184160 신희석 제공. 전체 내용의 원문과 번역본은 정혜경 외, 『반대를 논하다 - ‘반일종족주의’의 역사부정을 넘어』, 부록 참조

3) ILO,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https://www.ilo.org/global/standards/introduction-to-international-labour-standards/conventions-and-recommendations/lang-en/index.htm>>; ILO, Ratifications of C029 -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https://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1300:0::NO:11300:P11300_INSTRUMENT_ID:312174:NO>. 신희석 제공

은 현재 한국의 공적 기록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두세 줄의 사망기록이나 남긴 이들은 다행이다. 다수는 6.25 과정에서 호적이 소실되어 재등재하는 과정에서 미성년 사망자는 등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태어나서 강제동원되었으나 한국의 공적 기록에서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존재가 되어버린 경우이다. 공적 기록에서 사라진 이들은 가족들에게도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 가족들에게 기억의 대상조차 되기 어려운 어린이 사망자, 살아 돌아왔으나 어두운 과거라 치부하며 살아온 이들의 역사를 복원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몫이다.

현재 노무작업장에 동원된 미성년자의 피해 규모는 전혀 알 수 없다. 동원 주체였던 일본에서도, 피해국인 한국에서도 통계조차 찾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사회가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 사회의 무관심은 피해자성을 희석하는 단계로 이어지고 없었던 일이 되어버린다. 역사부정론자들이나 산케이신문의 주장이 사실로 되어 버릴 수 있다. 역사왜곡을 저지하고 사라진 조선인 미성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역사 속으로 소환하는 방법은 자료 발굴과 연구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한 거칠지만 몇 가지 연구 제언을 해보면, 첫째 미성년 노동의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의 합의이다. 사전적 정의를 보면, 어린이 즉 아동은 '보통 만 6세 이상 13세 미만'이다. 13세, 초등학교 6학년이 될 때까지 어린이라는 소리다. 그러나 다른 내용도 있다. 소년·소녀의 사회적 기준을 '18세까지'라는 문장이다. 법적 규정을 찾아보면 더욱 혼란스럽다.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은 '만 14세 미만'이다.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은 만 14세 미만이고, 청소년보호법이 규정한 보호 연령은 19세 미만(정확히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세는 나이로 20세 미만)이다. 사전의 내용과 법적 규정을 종합해보면, 최저연령은 14세 미만이고 사회적 통념은 18세까지다. 그러나 이상의 연령 기준은 현재적 기준이다. 그러므로 당시 국제 기준을 근거로 미성년 노동의 범위와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다양한 사례의 발굴과 분석의 필요성이다. 그간 학계는 노무작업장에 동원된 미성년자 관련 자료를 정리한 바 없다.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명부와 구술기록, 회고록 및 수기, 학적부 등을 통해 사례를 발굴하고 분석해 자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미성년 노무피해자의 경우에는 아직 생존자를 발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존의 구술기록을 정리하는 작업 외에 구술기록을 생산할 필요성이 있다.

세 번째, 연구 방향이다. 연구 방향은 크게 대상의 확대와 미시적·학제간 연구

로 나눌 수 있다. 대상의 확대는 조선인을 넘어서 아시아태평양지역 민중으로 확대함을 의미한다. 북한의 사례가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미시적 연구는 학적부 분석이나 명부 분석, 구술기록 분석 등 자료별 미시적 연구를 축적하는 것이다. 미시적 연구의 축적은 직종별 지역별 특징과 미성년 강제동원 특성을 도출해 전체상에 다가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학제간 연구는 역사학을 비롯해 교육학, 아동학, 법학(인권법, 국제법), 사회학(적응 과정), 구술사 등 관련 분야간 연구를 의미한다.

2015년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는 2017년 5월 22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주최 강연회와 기자회견에서 ‘작은 사람들’을 언급했다. 작가가 지칭하는 작은 사람들은 신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작가는 작은 사람들은 ‘늘 국가의 이용대상이었지만 역사는 거의 간과’하고 있으므로 ‘흔적 없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를 집필’했으며, “고난을 겪어낸 ‘큰 사람들’이라 표현하고 싶다”고 했다. 학계와 한국 사회의 노력으로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동원된 조선의 아이들이 작은 사람을 넘어 ‘고난을 이겨낸 큰 사람’으로 역사에 남게 되기를 바란다.

토 론 문

허광무(한국외대 일본연구소 초빙연구원)

신희석(연세대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

김정은(국립중앙도서관 사무관)

이영도(국가기록원 연구관)

조 건(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고난을 겪어낸 큰 사람들, 미발굴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동원된 조선의 작은 사람들 노무작업장의 아이들」

토론문

허광무(한국외대 일본연구소 초빙연구원)

1. 발제자이신 정혜경 선생님은 아시아태평양전쟁시기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해 실로 수많은 저작과 논문을 발표해 온 이 분야 최고의 권위자라고 생각합니다. 강제 동원·강제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1965년 재일사학자 박경식 선생님의 저서 이래 한 일 간 지속적인 관심 속에 자료발굴과 학술연구가 있어 왔습니다만, 사실 상 일부 학술단체나 연구자에 의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이고 수행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많은 사실들이 규명된 것처럼 한일 간 혹은 각국 내부에 있어서 뜨겁게 논의를 일으키고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것은 이것이 단지 정치적으로 대량 ‘소비’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발제한 내용은 그러한 요즘 세태에 일침을 가하고 향후 연구방향 등에 대해 중요한 제안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동노동, 청소년노동 문제라 하면 단연 여자근로정신대 문제를 생각하고 연구도 주로 이것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동환경이 열악한 탄광, 광산과 군수회사에 14세 미만의 어린 소년, 소녀들이 동원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역사에 남기는 작업을 시작한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발제와 함께 선생님이 동 분야 연구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하신 미성년의 노동 기준에 관해서는 법학을 전공하신 선생님께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 제언인 다양한 사례의 발굴과 분석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학도근로령’(1944)이나 ‘여자정신근로령’(1944) 등 법령에 근거한 미성년자 노무동원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조선인 학도들의 노동실태가 다양하게 수집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가령 모집을 가장한 어린이의 노무동원·강제노동의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선생님은 본 발표에서 조선에서 발생한 어린이 노무동원의 사례를 산업별로 보여주셨는데, 조선에서 일본이나 사할린 등 조선 외 지역으로 노무동원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오늘 발표한 연구사례는 그동안 도외시되어 온 일제에 의한 조선인 아동노동력 착취라고 하는 중요한 연구 시사점과 함께 전시기 국내노무동원에 관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강제동원·강제노동이라고 하면 일본 등 한반도 외 지역으로의 동원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학술연구나 정부지원 정책 등도 주로 한반도 외 지역에 집중하는 편인데 이러한 연구풍토나 정부지원 정책 등을 돌아보는 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국제법과 일제의 전시 아동 노동동원」

토론문

신희석(연세대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

1. 국제법의 의미

국제법은 근대 유럽 공법(Jus publicum Europaeum)으로 시작되었지만 19세기 이후 일본,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보편적 규범으로 수용하였다. 국제법상 의무는 국내법 규정을 이유로 회피할 수 없다. 따라서 국제법은 1930년대 후반부터 1945년 일제 패망까지의 전시 아동 노동동원을 평가할 법적 척도가 된다.

2. ILO 협약

제1차 세계대전(1914년~1918년) 종전 직후, 오랜 전쟁에 따른 피해와 1917년 러시아 공산혁명 성공의 여파로 영국과 프랑스 등 승전국에서도 혁명의 전운이 감돌았다. 이에 4대 주요 연합국이었던 일본을 비롯하여 1919년 파리 평화회담에 모인 승전국들은 노동 기준 설정, 정책 개발을 위하여 국제노동기구(ILO)를 창설하였다.

일본¹⁾ 및 한국²⁾이 가입한 ILO 협약과 가입 연도는 ILO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

1) ILO, "Ratifications for Japan", <https://www.ilo.org/dyn/normlex/en/f?p=1000:11200:0::NO:11200:P11200_COUNTRY_ID:102729>.

2) ILO, "Ratifications for Republic of Korea", <https://www.ilo.org/dyn/normlex/en/f?p=1000:11200:0::NO:11200:P11200_COUNTRY_ID:103123>.

하다. 한국은 지금도 ILO의 8개 기본협약 중 하나로 남아있는 1930년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강제노동협약)(29호) 가입이 진행 중이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일본은 1932년 진작에 이를 비준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ILO 강제노동협약 제1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한 한 조속히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 사용을 억제할” 법적 의무가 있었으며, ILO 강제노동협약 제2조 제1항은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아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라 정의하였다.

ILO 강제노동협약 제2조 제2항은 ‘순전히 군사적 성격의 일을 위하여 의무 병역법에 따라 강요되는 노동 또는 서비스’, ‘긴급한 경우, 즉 전쟁 … 및 일반적으로 주민 전부 또는 일부의 존립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과 같은 재해나 재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강요되는 노동 또는 서비스’를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의 정의에서 배제하고 있지만 수십, 수백만 명에 이르는 조선인 동원을 “순전히 군사적 성격의 일(work of a purely military character)”이나 전시 필요(wartime necessity)로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ILO 강제노동협약은 예외적으로 강제노동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강제노동은 외견상 나이가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신체 건강한 성인남성에게만 요구될 수 있고(제11조 제1항), 12개월 기간 중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에 동원될 수 있는 최장 기간은 작업장을 오가는 시간을 포함하여 60일을 초과하면 안 된다(제12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발적인 노동의 통상적인 노동시간과 동일한 노동시간, 초과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통상 요율에 따른 보수 지급(제13조),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것보다 낮지 않은 현금 보수 지급(제14조 제1항), 노동자 개별 임금 지급(제14조 제3항), 산재 보상(제15조 제1항), 노동자의 건강보호와 가족에게 송금 허용(제17조), 강제노동의 광산 갱내노동 사용 금지(제21조), 강제노동의 불법적인 강요 처벌 의무(제2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발표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은 당시 조선인이나 재일 한인 가족에서 동원한 아동 노동자들에 대하여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당시 일본이 가입했던 최저노동연령에 관한 4개 ILO 협약들의 관련 규정 원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005 – Minimum Age (Industry) Convention, 1919 (No. 5)³⁾

Article 2

Children under the age of fourteen years shall not be employed or work in any public or private industrial undertaking, or in any branch thereof, other than an undertaking in which only members of the same family are employed.

...

Article 5

1. In connection with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to Japan, the following modifications of Article 2 may be made:

- (a) children over twelve years of age may be admitted into employment if they have finished the course in the elementary school;
- (b) as regards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twelve and fourteen already employed, transitional regulation may be made.

2. The provisions in the present Japanese law admitting children under the age of twelve years to certain light and easy employments shall be repealed.

C007 – Minimum Age (Sea) Convention, 1920 (No. 7)⁴⁾

Article 2

Children under the age of fourteen years shall not be employed or work on vessels, other than vessels upon which only members of the same family are employed.

3) https://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2100:0::NO:12100:P12100_INSTRUMENT_ID:312150:NO

4) https://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2100:0::NO:12100:P12100_INSTRUMENT_ID:312152:NO

C010 – Minimum Age (Agriculture) Convention, 1921 (No. 10)⁵⁾

Article 1

Children under the age of fourteen years may not be employed or work in any public or private agricultural undertaking, or in any branch thereof, save outside the hours fixed for school attendance. If they are employed outside the hours of school attendance, the employment shall not be such as to prejudice their attendance at school.

C015 – Minimum Age (Trimmers and Stokers) Convention, 1921 (No. 15)⁶⁾

Article 1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the term vessel includes all ships and boats, of any nature whatsoever, engaged in maritime navigation, whether publicly or privately owned; it excludes ships of war.

Article 2

Young persons under the age of eighteen years shall not be employed or work on vessels as trimmers or stokers.

이를 보면 공업, 해상, 농업, 즉 대부분의 산업에서 만 14세 미만의 아동(Children under the age of fourteen years)은 원칙적으로 고용 또는 노동이 금지되어 있지만 일본은 최저연령(공업)협약(5호) 제5조의 예외규정을 통하여 기존의 만 1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만 고용 또는 노동이 금지되는 대신에 기존에 허용되었던 만 12세 미만의 아동 고용을 허용하던 법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석탄부(trimmer)⁷⁾ 및 화부(stokers)⁸⁾는 당시 석탄선에서 각각 석탄의 적재, 운반 및 증기기관의 가동을 담당하던 노동자들을 가리키며, 이들에 대해서만 18세 미만의 청년(young persons under the age of eighteen years)을 기준으로 고용 또는 노동을 제한하고 있다.

5) https://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2100:0::NO:12100:P12100_INSTRUMENT_ID:312155:NO

6) https://www.ilo.org/dyn/normlex/en/f?p=1000:12100:15256660290156::NO::P12100_SHOW_TEXT:Y

7) https://en.wikipedia.org/wiki/Coal_trimmer

8) [https://en.wikipedia.org/wiki/Fireman_\(steam_engine\)](https://en.wikipedia.org/wiki/Fireman_(steam_engine))

한편, ILO는 회원국들의 국제노동기준 적용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이사회에서 임명한 20인의 저명한 법조인으로 구성된 협약 및 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CEACR)가 있다. CEACR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중 개탄스러운 조 건 하에서 “사부문 통제 하의 광산, 공장, 공사장에서 일하게 만든” 약 70만명의 한국인, 4만명의 중국인 징용 노동자(conscripted labourers)에 관한 진정에 대하여 “이같이 개탄스러운 조 건으로 일본의 사부문 산업에서 일할 노동자를 대량 징용한 것은 강제노동협약 위반”이라는 소견이 1998년 채택되어 1998년 제87차 ILO 총회(ILC)에서 공표되었다.⁹⁾

CEACR의 판단은 일본의 강제노동협약(29호) 위반 여부로 국한된 것인데, 이번 발표문에서 확인된 매우 어린 아동의 강제동원 및 강제노동에 대하여 최저연령(공업)협약(5호) 제5조의 위반에 대한 판단도 구하였다는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3. 전쟁범죄 및 반인도범죄

당시 또는 현재 국제법에서 대규모 아동노동이 전쟁범죄나 반인도범죄로 규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아동을 포함한 많은 조선인 노동자가 전쟁범죄, 반인도범죄의 피해자였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제1차 세계대전(1914년-1918년) 이후 일본을 포함하여 승전한 연합국은 ‘전쟁책동자 책임 및 형벌집행에 관한 위원회’를 만들었고, 이 위원회는 “전쟁의 법과 관습, 그리고 인도의 법에 반한(against the laws and customs of war and of the laws of humanity)” 32개의 범죄 목록을 도출하였다.

이 범죄 목록에는 “(4) 민간인의 고의적인 굶주림, …(7) 민간인의 추방, (8) 비인도적 조 건 하에서의 민간인 수용, (9) 적의 군사작전과 관련한 민간인의 강제노동, …(11) 점령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무 입대, …(15) 부당하거나 과도한 분담과 징발의

9) Observation (CEACR) – adopted 1998, published 87th ILC session (1999),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 Japan (Ratification: 1932), https://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3100:0::NO::P13100_COMMENT_ID:2172187

강요, (16) 화폐가치 저하 및 위폐 발행, (17) 집단 처벌의 부과”가 포함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불가리아, 터키와의 평화 조약에서 패전국들은 “전쟁의 법과 관습을 위반한 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제기된 사람들을 군사재판소에 회부할” 연합국의 권리를 인정하였다. 특히, 터키는 전쟁 중 자국의 기독교 아르메니아계 주민의 학살에 대해서도 연합국이 책임자를 처벌할 권한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뒤이은 정치적 혼란 속에 평화조약의 규정에 따라 반인도범죄와 전쟁범죄 행위를 재판에 회부하려는 시도는 좌초했지만 독일과 터키는 연합국의 압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국내 특별법원에서 자체적으로 몇몇 하급 전범들을 기소하여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일본은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국제형사법 원칙에 동의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주요 전범 처벌을 위해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IMT)와 일본 주요 전범 처벌을 위해 도쿄 극동 국제군사재판소(IMTFE)가 설치되었다. 두 재판소의 관할범죄로는 평화에 반한 죄(침략범죄),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반인도범죄)가 있다.

이 중에서 ‘전쟁범죄’가 전쟁 중 적국 군인이나 민간인을 상대로 한 헤이그 육전협약 등 전쟁법 위반행위의 처벌을 규정한 반면에 ‘반인도범죄’는 국적과 무관하게, 즉 자국민을 상대로 한 잔학행위까지 처벌을 규정하였다.

‘반인도범죄’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학살한 유대인 600만 명 중 프랑스, 폴란드 등 연합국 국적의 유대인 학살은 ‘전쟁범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독일, 이탈리아 등 추축국 국적의 유대인 학살은 ‘전쟁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이는 당시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의 합법성과 무관하게 ‘위안부’, 강제노동 등 한국인에 대한 잔학행위는 ‘반인도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인도범죄’의 적용범위는 당시 연합국 전범위원회 UNWCC 에서 조선인, 대만인뿐만 아니라 일본의 정치범, 신사참배 거부로 탄압받은 종교인까지 피해자로 보고 수사, 기소를 검토했을 정도로 넓다. 국제군사재판소 IMT 현장 제6조 (b)호는 전쟁범죄(war crimes)에 “점령지의 또는 점령지에 있는 주민의 살해, 학대, 노예노동이나 다른 어떠한 목적을 위한 추방”이 포함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IMT 현장 제6조 (c)호 및 극동국제군사재판소 IMTFE 현장 제5조 (c)호는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의 예로 “살해, 절멸, 노예화, 추방 및 다른 비인

도적 행위”와 “인종적 이유에 따른 박해”를 들고 있습니다.

1947년 유엔 총회 결의 177(II)호에 따라 유엔 국제법위원회(ILC)가 정리한 뉘른베르크 IMT 현장과 판결의 내용을 정리한 7개의 뉘른베르크 원칙(Nuremberg Principles)은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전쟁범죄	점령지의 또는 점령지에 있는 주민의 살해, 학대, 노예노동이나 다른 어떠한 목적을 위한 추방; 전쟁포로나 해상 인원의 살해나 학대, 인질 살해, 공유 또는 사유 재산의 약탈, 도시, 읍이나 촌락의 악의적 파괴, 또는 군사적 필요로 정당화되지 않는 유린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전쟁의 법과 관습 위반 ¹⁰⁾
인도에 반한 범죄	어떠한 평화에 반한 죄나 전쟁범죄의 수행 중에 또는 평화에 반한 죄나 전쟁범죄와 관련하여 행해진 민간인 주민에 대한 살해, 절멸, 노예화, 추방 및 다른 비인도적 행위 또는 정치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이유에 따른 박해 ¹¹⁾

따라서 전후 연합국 전범재판에서 한국인 강제동원 강제노동이 실제 기소된 사례는 없지만 일제의 한국인 강제동원 강제노동은 당시 국제법상 ‘전쟁범죄’ 및 ‘반인도범죄’로써 처벌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46년 12월 11일 유엔 총회는 1946년 10월 1일자 뉘른베르크 IMT 판결 이후 결의 95(I)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IMT 현장과 1946년 1월 19일 도쿄 IMTFE 현장에서 비슷한 원칙들이 채택된 사실에 주목하고, 뉘른베르크 재판소 현장과 판결에서 인정된 국제법 원칙들을 확인하였다. 한편,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前文에서 “모든 상황에서 유엔 현장의 원칙을 따르고, 세계인권선언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 의사를 선언하였고”, 제11조에서 “극동국제군사재판소와 다른 일본 국내와 국외 소재 연합국 전쟁범죄 법원의 판결을 수락한다”고 하였다.

10)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Violations of the laws or customs of war which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murder, ill-treatment or deportation to slave labor or for any other purpose of civilian population of or in occupied territory; murder or ill-treatment of prisoners of war or persons on the Seas, killing of hostages, plunder of public or private property, wanton destruction of cities, towns, or villages, or devastation not justified by military necessity.”

11)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Murder, extermination, enslavement, deportation and other inhumane acts done against any civilian population, or persecutions on political, racial, or religious grounds, when such acts are done or such persecutions are carried on in execution of or in connection with any crime against peace or any war crime.”

4. 국제법상 일제의 전시 아동 노동동원에 대한 법적 평가

1989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 제1조는 “아동”을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미만의 모든 사람”이라 정의하여 18세 미만을 원칙으로 하되 각국에 법적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¹²⁾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일본이 가입한 ILO 최저연령협약들을 보면 공업 분야에서는 만 12세 미만 아동, 해상 및 농업 분야에서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고용이나 노동이 금지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외에도 ILO 강제노동협약(29호)에서 강제노동 대상을 외견상 나이가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신체 건강한 성인남성으로 제한한 제11조 제1항을 비롯하여 동 협약의 다른 규정들의 위반은 아동 강제노동자의 경우에도 당연히 불법이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노동 자체를 국제형사법상 국제범죄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성인 강제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아동 강제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전쟁범죄 및 반인도범죄에 해당되는 피해 사실들이 확인되므로 이는 별도로 국제법의 위반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발효일 1991. 12. 20] [다자조약, 제1072호, 1991. 12. 23], <http://www.law.go.kr/trtyInfoP.do?mode=4&trtySeq=188>

「국립중앙도서관의 일제강점기 자료 현황」

토론문

김정은(국립중앙도서관 사무관)

국립중앙도서관은 1945년 10월 15일 국립도서관으로 개관하였다. 개관 당시 조선총독부도서관의 장서 대부분을 계승하였으며, 기록에 따르면 소장장서 28만 4457책, 직원 34명, 38만 3926원의 예산으로 시작하였다.

조선총독부도서관은 일본의 식민지 정책을 뒷받침하는 자료 제공과 한국민의 독립의식을 무마하기 위한 문화시책의 일환으로 1923년에 설립되어 한국 관련 자료 수집에 중점을 두었다. 1924년도에 발표된 조선총독부도서관의 사명에 나타난 자료수집의 원칙을 살펴보면, 조선 통치의 주요 방침에 기초한 사상의 선도, 교육의 보급, 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신고(新古)도서를 갖출 것, 조선 민족의 문헌을 수집할 것, 광의에 있어서의 조선 연구에 관한 화한양서(和漢洋書)를 수집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총독부도서관이 22년 여에 걸쳐 수집한 28만 여 책의 구성을 보면 동서(東書)가 13만 8천 여 책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고서 12만 9천 여 책(45%), 서양서 1만 6천 여 책(6%) 순이었다. 특히 '조선문(朝鮮文)'이라는 조선 통치를 위한 참고자료를 모은 분류를 두어 만주와 몽고, 시베리아 지역을 포함한 일제의 대륙침탈에 필요한 연구자료를 한 데 모으고자 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일제강점기에 출간된 자료는 대부분 총독부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된 자료이나, 그 이후 구입과 기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 시기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수집해왔다. 특히 2014년부터 3년에 걸쳐 이광수의 「무정

(1920. 재판본)』, 서정주의 「화사집(1941. 특제본)」 등 소중한 문학자료를 추가 수집하여 이용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 시기 자료들은 출판연대가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해방과 전쟁, 그리고 여러 차례 이전으로 보존상태가 좋지 않은 자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은 자료보존과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디지털 원문제작 사업을 다년간 진행해 왔으며, 85천 여 책이 디지털 원문으로 도서관 홈페이지에 제공되고 있다. 상당수 자료들이 저작권이 소멸된 자료들로 어디에서나 원문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이 시기 출간된 자료들 중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유일본 및 귀중자료를 발굴하여 학술연구에 쓰일 수 있도록 「1945년 이전 한국관련자료 해제집」(2007-2011, 2013 / 총 7권)을 출간하였다. 「朝鮮科學史」, 「修身教育指導原理と樣式」 등 총 1,950종에 대한 해제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이 자료 역시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디지털 원문으로 공개하고 있다.

「1945년 이전 한국관련자료 해제집」 출간 현황

년도	해제집	대상자료	분류번호	해제종수
2007	I	철학·종교·교육·사회	朝00-朝19	259
2008	II	법률·정치·행정·외교	朝20-朝29	302
2009	III	경제	朝30-朝39	338
2010	IV	어학·문학·역사	朝40-朝59	244
2010	V	지리	朝60-朝69	298
2011	VI	이학·산업·총류	朝70-朝99	309
2013	VII	교육·법률·경제·역사	구동서	202
계				1,950종

이 시기 자료들은 당시 사회·역사·정치·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가장 핵심적인 정보원이라 할 수 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자료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수집하여 이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도서관의 사명이다.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은 이 시기 자료들을 망라적으로 수집·보존·제공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립중앙도서관

은 첫째, 산재된 근대시기 자료의 적극적 수집과, 둘째, 동시기 자료의 발굴과 연구를 위한 부서의 신설과 확대, 셋째 디지털화와 데이터화 작업을 통한 제공 콘텐츠의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시기를 포함하여 1964년 납본법 제정이전의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해 기증 및 구입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나 자료의 소재 파악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소재 파악 이후에도 구입예산의 한계에 부딪혀 제한적인 수집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고문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 있는 근대시기 문헌에 대한 연구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적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직 디지털화 되지 않은 자료들에 대한 디지털 원문 제작과 데이터 컬렉션 구축은 동시기 연구자들에게 연구의 지평을 확장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어 및 한자처리, 세로쓰기, 현대어 번역 등 데이터화를 위한 기술적 문제들의 해결을 포함하여 국가도서관이 담당해야하는 과제의 양이 상당하다. 3개 기관의 협력이 향후 도서관 서비스의 진일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일제 강제동원 관련 명부 통합 DB구축」추진상황 토론문

이영도(국가기록원 연구관)

1. 추진 개요

- 일제 강제동원 관련 實狀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와 서비스 기반의 마련
- 국내 유관기관 소장 명부의 통합서비스와 동원 實態에 대한 정리와 분석
- 강제동원 진상에 대한 전문 연구의 外延 확대와 국민적 관심 제고에 기여

2. 추진 내용

- (기조) 기록원 소장 명부(185만 명 분, 중복 포함) 및 유관기관 소장 명부(국편·강동)의 DB화
- (방향) 연차별(4개년 예정) 명부 수집 · 정리 · DB화 및 활용 기반 확대(학술 · 해제, 참고자료 확보)

- (종합계획) 「일제 강제동원 관련 명부 통합DB사업」추진계획 마련('20.1.14.)
- (연구사업) 「국가기록원 소장 강제동원 명부 조사 · 분석 연구」 사업(3.16~10.11., 7개월)
 - 국가기록원 소장 군인 · 군속 · 노무자 관련 명부, 러시아 수집 및 유골 명부 대상(100종)

○(구축사업) 「일제 강제동원 관련 명부 서비스 구축」 사업(1차)(5.18.~10.15., 5개월)

－ 대상 : 명부 2종 129권 23.3만여건

※ 「유수명부(留守名簿)」*114권 약 16만 3천여건

* 전투지(戰鬪地)나 외지(外地)에 있는 부대에 속하는 군인·군속에 관한 기록, 가족 등에 대한 은급(恩給), 연금, 기타 지급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음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 결과」15권 약 7만여건

－ 내용 : 명부별 메타항목* 입력 및 신규 온라인 콘텐츠 개발

* 「유수명부」: 편입연월일, 본적, 유수담당자, 징집일, 역종, 병종, 성명, 생년월일 등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 결과」: 성명, 연령, 본적, 직종, 입소·퇴소연월일, 미불금 등

○(학술지원) 강제동원 관련 통치제도(법규) 및 조직(기능) 분석 계획 수립(2.21.)

－ 「강제동원 관련 법규(칙령~훈령, 고시 등) 분석과 연표 정리」(3.27.~9.29.)

－ 「조선총독부 조직(본부·소속관서·위원회 등)의 기능 및 연혁 정리」(4.17~10.8.)

○(명부수집) 유관기관 및 부내(행안부) 관련 부서 소장 명부류 등 확보(2~11월)

－ (명부확보) 「국가기록원 및 유관기관 소장 명부류」 대상 협조 및 디지털화

• (디지털화 협조) 과거사지원단 既 구축 「진상관리시스템」 등 탑재 명부류(2월)

• (디지털화, 1차) 국가기록원 및 국사편찬위원회 명부류·간행물 등 10,268매
(6.22~7.17.)

• (디지털화, 2차) 국가기록원 및 역사관 명부류, 중앙도서관 간행물 등 10만매
(9~11월 예정)

－ (자료확보) 역사관 자체 관리 명부 관련 CD자료(엑셀 등) 협조*(5.13., 1차)

* 일부 미확보 CD수록 자료에 대해서는 6~7월 중 확보(6.18., 2차, ‘해군신상조사표’ 등)

- (기획사업) 기록원내 유관부서의 명부포털(콘텐츠) 현행화 및 기획편찬 추진
 - (명부포털) 故 김광렬 선생 기증 명부류 중 일부 포털 반영(2월, 29,901명)
 - (기획편찬) 「일제 강제동원 관련 사진집」(300부) 1종 발간(8.15.)

3. 향후 계획

- 1차('20년) 구축 강제동원 관련 명부(23만건) 기록원 홈페이지 서비스('20.12월)
- 강제동원 관련 명부 통합 DB 구축('21~'23년)
 - 국가기록원 및 유관기관(국편, 강제동원역사관) 소장 명부 약 162만건
- 강제동원 관련 명부 분석·조사 연구 및 학술사업 확대
 - 명부 200종 조사·분석, 강제동원 관련 역사적 맥락 연구 등

「동북아역사재단 일제 침탈 관련 대응 현황」

토론문

조 건(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 대응 배경

- 현재 한일 간 역사 갈등은 일제의 한국 침탈과 1965년 한일협정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차이에 기인
 - 아베 정부는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설립된 산업유산정보센터 전시에서는 한국인 강제동원 자체를 부정하고 있음.
 -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강제동원과 ‘성노예’ 피해를 부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
 - 금년 3월 검정통과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왜곡 주장 확대, 식민 지배 피해 관련 내용 축소 및 왜곡

2. 2020년부터 일제침탈사 편찬사업(2020~2022) 추진

목적	▶ 우리 정부의 역사 · 외교 정책 토대 강화 ▶ 식민지배 실상 왜곡 대응 · 올바른 역사인식 확산
-----------	--

연구총서 [50권]	자료총서 [100권]	교양총서 [70권]
▶ 일제 식민지배 정책과 피해 실태 체계적 연구 ▶ 식민지배 유산 비판적 검토 ▶ 대학 교재로 활용	▶ 정책, 법령, 제도, 실행 관련 주요자료 편찬 ▶ 자료 정리, 해제, 번역 ▶ 대학 강의 및 초·중·고 수업 활용	▶ 사진, 도표 등을 활용 알기 쉽게 저술 ▶ 주요도서 영문번역 ▶ 중고생 및 국민들의 역사인식 제고

3. 2020년도 사업 진행 현황

	사업추진 현황	발간
일제침탈사 연구총서	- 3차례 공모를 통해 40개 주제 집필자 선정 ※ 8월까지 50개 주제 집필자 선정 완료 예정 - 10월에 16개 주제에 대한 최종보고서 접수 예정	11권
일제침탈사 자료총서	- 2차례 공모를 통해 17개 주제 55권 집필자 선정 - 주요자료 번역 자료집 3권 분 번역 추진 -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료집 2권 발간(7월), 2권 추진 - 1910년 이전 일본 침략 자료집 발간 추진	14권
일제침탈사 교양총서	- 2차례 공모를 통해 12개 주제 집필자 선정 - 재단에서 8개 주제 집필 - ≪일제침탈 30장면≫ 영문 번역 추진	20권
한일회담 자료총서	- 대일배상요구조서(1949년) 등 주요 문서 정리, 번역, 해제	10권

4. 연관 사업 추진 현황

한일협정 자료집 발간 [40권]	▶ 한일 양국 주요 논리와 관련 자료 체계적 정리 ▶ 청구권 관련 우리 정부 입장 강화 ▶ <대일배상조서(1949)> 등 주요 자료 해제, 번역
일제 동남아 침탈 연구 [10권]	▶ 일본의 동남아 침략 · 점령 정책, 피해실태 연구, 자료집 발간 ▶ 동남아 국가들과 공동연구, 학술회의 추진 ▶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기반 강화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 대응 홈페이지 구축	▶ 일본 산업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문제점 지적 ▶ 등재된 산업유산의 강제동원 실태 제시 ▶ 산업유산정보센터의 강제동원 왜곡 및 부정 실태 부각

Memo

Memo

Memo _____